



국가회계 해외 동향
재정통계 동향
특집 - OECD 보고서
센터 동향
회의 및 세미나
공지사항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선도합니다.



Contents

국가회계 해외 동향

재정통계 동향

특집 - OECD 보고서

센터 동향

회의 및 세미나

공지사항

01

국가회계 해외 동향

1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IPSASB¹⁾)가. IPSASB, ‘IPSAS²⁾ 40, 공공부문 결합’ 발표

2017년 1월 31일 IPSASB는 새로운 기준서인 ‘IPSAS 40, 공공부문 결합’을 발행했다. IPSAS 40은 실체 및 사업(operations)의 결합 회계처리에 대한 공공부문의 수요를 명확하게 다룬 최초의 국제회계 규정을 제공한다.

정부부처의 조직개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과 같은 공공부문 결합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회계이슈는 해당 거래가 민간에서 발생할 때와는 상이하다.

IPSAS 40은 공공부문 결합의 유형을 병합(amalgamations)과 인수(acquisitions)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간에서 사용하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은 모든 결합을 인수로 처리하고 공정가치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공부문에서 훨씬 더 흔하게 일어나는 병합의 경우 이러한 공정가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IPSAS 40에 따른 병합 회계처리는 기존 정보에 기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 실체가 불필요한 가치평가 비용을 회피하면서도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

Ian Carruthers IPSASB 위원장은 “과거에는 정부가 결합 회계처리를 직접 개발하거나 민간의 회계 기준을 참고해야 했다. 그러나 우리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민간의 기준이 공공부문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해왔다”면서 “IPSAS 40은 이러한 우리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씻어내면서 IPSASB 문헌(literature)의 중요한 빈틈을 메워줄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공공부문에 특화된 적절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결합에 관한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IPSAS 40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권장된다. 정부가 이 새로운 규정을 이해하는

1) IPSASB: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

2) IPSAS: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

것을 돕기 위해 IPSASB 조사연구실(staff)은 요약보고서(At-a-Glance summary)와 소개 웨비나(introductory webinar)를 만들 예정이다.

(출처) <http://www.ifac.org/news-events/2017-01/ipsas-40-public-sector-combinations-improves-reporting-government-restructurings>

2 미국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³)

가. 공개초안 ‘예산 정보와 발생주의 정보의 차이조정에 관한 기준서’ 발표

FASAB는 2016년 12월 21일 공개초안 ‘예산 정보와 발생주의 정보의 차이 조정에 관한 기준서’를 발표하였다.

이 기준서는 ‘SFFAS⁴) 7, 수익 및 기타 재원조달 회계 및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간 차이조정 개념’에 따른 예산 정보와 발생주의 정보의 차이 조정과 관련된 규정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공개초안은 현행 예산 정보와 발생주의 정보 차이의 조정 방식을 새로운 조정 방식(NBAR)으로 대체하는 한편, 회계실체의 보고기간에 걸친 예산상 순지출과 순운영원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공개초안의 새로운 조정 방식(New budget and accrual reconciliation)은 발생된 의무보다 순지출에 대한 조정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1) 예산재원과 프로그램운영원가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2) 기관의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간의 조정을 보다 단순하게 하며, (3) 재무보고를 개선하는 효과를 갖는다. D. Scott Showalter FASAB 위원장은 “이 새로운 조정 방식은 순운영원가와 예산적자 간 조정이 필요한 정부 전체 회계 보고를 지원함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2017년 3월 14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며, 공개초안과 이에 대해 제기된 구체적인 질문은 FASAB 홈페이지(<http://www.fasab.gov/documents-for-comment/>)에서 각각 PDF 및 Word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출처) http://files.fasab.gov/pdf/budget_and_accrual_reconciliation_pr_dec_2016.pdf

3) FASAB: 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미국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

4) SFFAS: Statements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미국 연방재무회계기준)

나. 'SFFAS 51, 보험사업' 발표

FASAB는 2017년 1월 18일 'SFFAS 51, 보험사업'을 발표하였다.

SFFAS 51은 보험사업의 원가 및 부채와 관련한 간결하고 유용하며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을 세 가지 유형(생명보험, 생명보험이 아닌 교환거래 보험, 비교환거래 보험)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관련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SFFAS 51에 따라 'SFFAS 5, 연방정부의 부채회계' 문단 97 내지 121에 따른 보험 및 보증사업과 관련된 기존 규정은 폐지된다.

Showalter 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연방재무보고를 개선하고 독자들에게 보험사업의 운영 성과와 함께 불리한 사건(adverse events)으로 인한 손실 발생 위험에 대해 더 잘 알리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SFFAS 51은 <http://www.fasab.gov/document-by-chapte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출처) http://files.fasab.gov/pdffiles/sffas_51_nr.pdf

3 미국 주지방정부 회계기준위원회(GASB⁵)

가. 재무보고 모형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조회서 발행

GASB는 2017년 1월 4일 추진 중인 '재무보고 모형 재검토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얻기 위해 '의견조회서(ITC), 재무보고 모형 개선사항 - 정부기금'을 발행하였다.

GASB는 재무보고 모형에 관한 현행 기준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 중인데, 이번 ITC는 연구 과정에서 발견된 재무보고 모형 중 정부기금 부분의 개선 가능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다. 모형의 다른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은 향후 별도 문서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재무보고 모형 중 정부기금 부분의 개선 가능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인식 접근법(측정 주안점 및 회계처리의 기준)
- 재원의 흐름에 대한 정부기금 보고서의 양식

5) GASB: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Board(미국 주지방정부 회계기준위원회)

- 구체적인 용어 정의
- 정부 전체 보고서(the government-wide statements)와의 조정
- 특정 인식 접근법에 따른 현금흐름표

David A. Vautt GASB 위원장은 “재무보고 모형의 재검토 결과 만들어진 이번 최초 문서들은 2년이라는 연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이 정부기금 개선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이해관계자들이 정부기금과 관련된 근본적인 이슈에 대한 GASB의 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해관계자는 2017년 3월 31일까지 ITC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출처) http://www.gasb.org/cs/ContentServer?c=GASBContent_C&pagename=GASB%2FGASBContent_C%2FGASBNewsPage&cid=1176168738602

4 캐나다 공공부문화계기준위원회(PSAB⁶⁾)

가. 자산폐기의무에 관한 공개초안 발표

PSAB는 2017년 3월 9일 자산폐기의무(Asset Retirement Obligations)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간하고 ‘PS 3270, 고품 폐기물 매립지의 폐쇄 및 폐쇄 이후 부채’의 폐지를 제안하였다. 이 공개초안을 통해 제정 될 신규 기준서(section)는 CPA Canada PSA Handbook에 기초하여 회계 정책을 정하고 있는 공공부문 회계실체들에 적용될 예정이다.

공개초안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자산폐기의무가 유형고정자산의 폐기와 관련된 법적 의무이다.
- 회계실체가 통제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과 관련된 자산폐기비용이 해당 유형고정자산(또는 그 구성요소)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비용처리된다.
- 더 이상 생산적인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산과 관련된 자산폐기비용은 비용처리된다.

6) PSAB: Public Sector Accounting Board(캐나다 공공부문화계기준위원회)

- 부채의 후속 측정은 재측정의 성격 및 관련된 자산의 생산적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해당 유형고정 자산(또는 그 구성요소)의 장부가액 또는 비용에 변화를 줄 수 있다.
- 자산폐기의무는 폐기 이후 운영, 유지 및 감독을 포함한다.
- 현재가치기법은 대개 해당 부채를 추정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PSAB는 신규 기준서 적용에 따라 'PS 3270, 고품 폐기물 매립지의 폐쇄 및 폐쇄 이후 부채'가 폐지 될 경우 실무관행에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 회계처리가 사용에 기초한 부채의 증분 인식에서 취득, 건설, 개발, 또는 일반적 사용에 따른 인식으로 바뀌므로 의무가 더 조기에 인식된다. 의무의 조기 인식은 순채무의 조기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 생산적 사용이 가능한 유형고정자산과 관련된 자산폐기비용의 경우 비용처리되지 않고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더해지므로 자산과 관련하여 인식되는 비용이 증가한다.
- 제안된 기준서가 매립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자산과 관련된 자산폐기의무에 적용되기 때문에 제안된 기준서를 자산폐기의무에 적용할 때 전문가적 판단이 더 많이 필요하다.
- 회계처리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주석 공시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 답변을 워드 형식으로 작성하여 이메일(ed.psector@cpacanada.ca)을 통해 송부해야 한다. 한편, 신규 기준서는 2021년 4월 1일 이후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 <http://www.frascanada.ca/standards-for-public-sector-entities/documents-for-comment/item83934.pdf>

5 호주 회계기준위원회(AASB⁷⁾)

가. 연구보고서 『호주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검토』 발표

AASB는 2017년 3월 28일 『호주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호주 기업 실체에게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원활하나 공공 부문실체, 자선단체, 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목적실체(NPF)의 경우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재무정보의 작성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보고서는 호주의 모든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의 응답을 정리한 것으로, 이해관계자들은 AASB에서 주관하는 인터뷰와 포럼을 통해 호주의 IFRS 도입 이후 10년 동안의 경험과 견해를 공유해 왔다. AASB는 작년 한 해 동안 80명의 작성자와 이용자, 감사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고 총 180여 명의 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인과 애널리스트가 참석한 5번의 포럼을 개최하는 등 폭넓은 활동과 협의를 거친 바 있다.

Kris Peach AASB 위원장은 “연구보고서는 현행 국제회계기준이 비영리목적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서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과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ASB는 특별히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AASB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세계적 수준의 회계기준을 개발하고 유지할 때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활발한 협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www.aasb.gov.au/Media-Releases/Australia-s-accounting-standards---more-modifications-and-guidance-needed-for-the-not-for-profit-sector?newsID=215821>

나. 민간투자사업의 사업허가자 관련 회계처리 신설 제안

AASB는 민간투자사업의 공공부문 사업허가자에게 적용될 새로운 회계 규정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2017년 3월 14일까지 제출받았다. 이 새로운 규정은 사업허가자 관점에서 민간투자사업(SCA)의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회계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AASB: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호주회계기준위원회)

(자산 인식)

기준서 초안은 사업허가자가 민간투자사업을 통제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 자산을 사업허가자가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서 민간투자사업을 통제하는 경우란 다음을 모두 충족한 때를 말한다.

- 사업시행자가 해당 자산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내용, 이용자 및 가격을 사업허가자가 통제하거나 감독하는 경우
- 사업허가자가 사업기간 말에 해당 자산에 대한 잔여지분의 유의적인 부분을 통제하는 경우

(현행대체원가로 자산금액 측정)

기준서 초안은 민간투자사업 자산을 최초 측정할 때 공정가치 측정 접근법 중 원가접근법(cost approach)에 부합되도록 ‘현행대체원가(current replacement cost)’를 적용하며,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대응되는 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정가치(현행대체원가)로 민간투자사업 자산을 최초 측정하는 것이 해당 자산을 재평가모형에 따라 측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채 인식)

민간투자사업 부채는 금융부채(financial liability) 모형 또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허가권(grant of a right to the operator) 모형을 사용하여 인식된다(혼합된 약정의 경우 두 개 모형을 모두 사용 가능함). 사업시행자에 대한 허가권 모형은 민간투자사업 자산의 제3자 이용에 따른 수익의 권리가 사업시행자에게 있는 경우 적합하다. 인식된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AASB 9, 금융상품’ 등 금융상품에 관한 기준서를 적용한다.

한편, 최종 기준서는 2017년 5월에 발표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도 허용된다.

(출처) <http://www.aasb.gov.au/News/New-Accounting-Requirements-for-Grantors-of-Service-Concession-Arrangements---Fatal-Flaw-Review-Draft-Available-for-Comment?newsID=217450>

6 뉴질랜드 회계기준위원회(NZASB⁸) 동향

가. 종업원 급여에 관한 공개초안 발표

NZASB는 2016년 12월 2일 'IPSAS⁹) 39, 종업원급여'에 기반을 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공개 초안에 담긴 개정안은 비영리목적실체(public benefit entities(PBEs)) 중 1단계(Tier 1) 및 2단계(Tier 2)에 속한 회계실체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NZASB는 각 회계실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 * 비영리목적회계실체 중 1단계(Tier 1): 공시의무가 있거나 대규모인 비영리목적회계실체
- 비영리목적회계실체 중 2단계(Tier 2): 공시의무가 없는 소규모 비영리목적회계실체

한편, IPSASB¹⁰)는 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IPSAS의 규정들을 'IAS 19, 종업원급여(2011년 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과 일치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IPSAS 25, 종업원급여'를 대체하는 IPSAS 39를 2016년 초에 발표한 바 있다(해당 프로젝트 추진 결과, 일명 '범위접근법'이 삭제되었고 일부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¹¹). 이번 공개초안에 따른 개정안은 비영리목적실체회계기준(PBE Standards)의 종업원급여 관련 요구사항을 'IPSAS 39, 종업원급여'의 요구사항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NZASB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비영리목적 회계실체의 의사에 따라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출처) <https://www.xrb.govt.nz/accounting-standards/standards-in-development/current-exposure-drafts/ed-nzasb-2016-11/>

8) NZASB: New Zealand Accounting Standard Board(뉴질랜드회계기준위원회)

9) IPSAS: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10) IPSASB: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11)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6년 3분기 『GAFSC 뉴스레터』 참조.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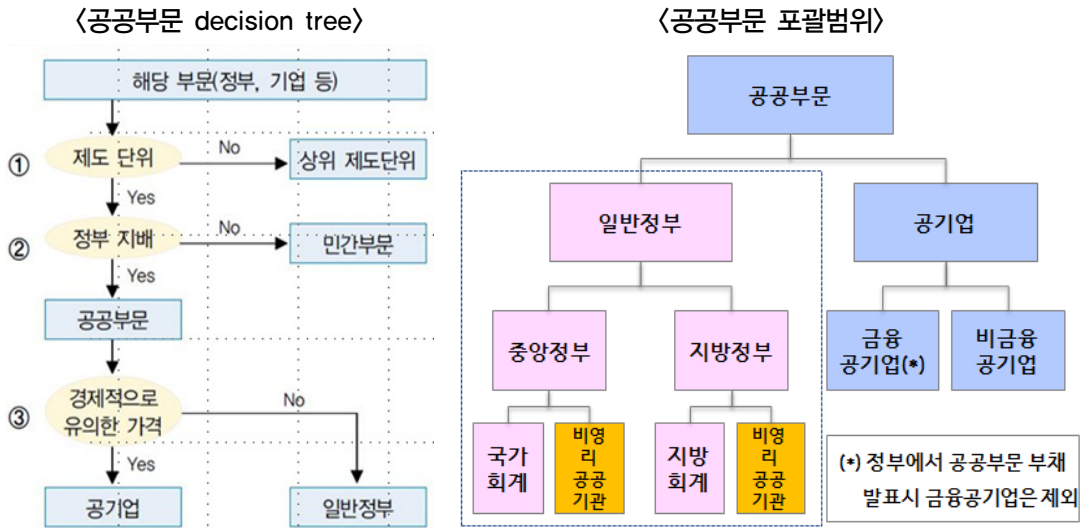
재정통계 동향

1 2015년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

가. 작성기준

정부는 재정통계의 객관적인 국제비교와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제정한 GFSM(재정통계편람) 2001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GFSM 2001의 주요 특징은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를 재정통계 작성범위로 하고, 발생주의 회계 및 시장가격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GFS체계는 저장(stock)과 유량(flow)을 결합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거래 유형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나. 포괄범위



GFSM 2001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에 제출하는 재정통계 연차보고서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즉 일반정부 단위로 작성된다.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포괄범위는 2008 SNA, ESA 2010 등에서

제시하는 ‘공공부문 decision tree’와 같이 제도단위와 시장성 기준 등을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하여 포괄범위를 산정한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포함하며, 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중 독립적 제도단위, 시장성 기준, 특수 기준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 ① 제도단위 : 정부와 독립적인 제도단위가 아닌 경우 일반정부로 분류(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② 시장성 기준 :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경제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가격)인 경우 일반정부, 50%를 초과할 경우 공기업(금융공기업, 비금융공기업)으로 분류
- ③ 특수 기준 : 사회보장기구, 구조조정기구,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경우(정부 판매비율 80% 이상) 일반정부로 분류

중앙정부는 국가회계·기금(56개 중앙관서 및 국고금 회계) 및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시장성 없는 공공기관(194개)을 포함하며, 재정통계 연차보고서의 작성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한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에 있는 시장성 없는 공공기관(직영기업 257개, 공사 및 공단 92개)과 지방교육재정(17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교육부에서 재정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단위로 작성된 재정통계 연차보고서를 일반정부 단위로 통합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다. 주요 연차보고서

GFISM 2001에서는 총 13종의 연차보고서(Statement 2개, Table 9개, Annex 2개)가 작성되는데, 이 중 주요 보고서는 정부운영표와 재정상태표라고 할 수 있다. 이하의 장에서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기준의 정부운영표와 재정상태표의 주요 사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1) 일반정부 정부운영표

〈일반정부 3개년 정부운영표〉

(단위 : 조원,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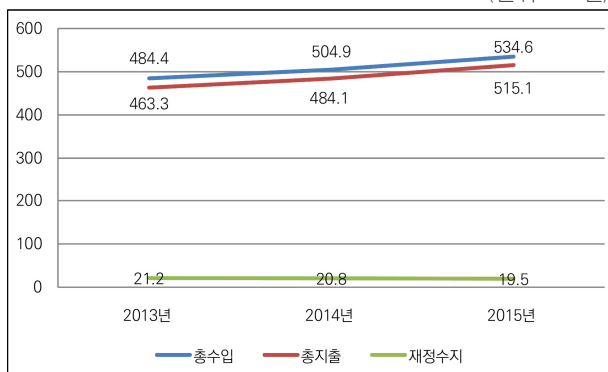
구 분	2013년	2014년(A)	2015년(B)	증감(B-A)	증감률(%)
□ 총수입(A)	484.4	504.9	534.6	29.6	5.9
(GDP 대비, %)	(33.9)	(34.0)	(34.3)	(0.3)	(0.9)
○ 조세	260.2	270.5	291.2	20.7	7.6
○ 사회보험료	95.7	102.6	109.4	6.8	6.6
○ 출연	0.0	0.0	0.0	△0.0	△21.1
○ 기타수익	128.5	131.8	134.0	2.2	1.6
□ 총지출 ¹⁾ [(1)+(2)]	463.3	484.1	515.1	30.9	6.4
(GDP 대비, %)	(32.4)	(32.6)	(33.0)	(0.4)	(1.4)
(1) 비용(B) ¹⁾	421.1	442.8	470.2	27.3	6.2
(GDP 대비, %)	(29.5)	(29.8)	(30.2)	(0.3)	(1.2)
○ 피용자 보수	86.3	90.4	94.9	4.5	5.0
○ 재화와용역의사용	86.3	92.2	99.1	6.8	7.4
○ 고정자산소비	24.0	24.7	26.6	1.9	7.7
○ 이자	21.6	22.6	22.2	△0.4	△1.8
○ 보조	70.6	70	76.6	6.6	9.4
○ 출연	0.5	0.6	0.7	0.1	10.2
○ 사회급여	85.6	92.6	100.1	7.5	8.1
○ 기타비용	46.2	49.7	50.1	0.4	0.8
(2) 비금융자산순취득(C) ¹⁾	42.2	41.3	44.9	3.6	8.7
(GDP 대비, %)	(3.0)	(2.8)	(2.9)	(0.1)	(3.6)
□ 순운영수지(A-B)	63.3	62.1	64.4	2.3	3.7
(GDP 대비, %)	(4.4)	(4.2)	(4.1)	(0.0)	(△1.2)
□ 순융자·차입(A-B-C)	21.2	20.8	19.5	△1.3	△6.3
(GDP 대비, %)	(1.5)	(1.4)	(1.3)	(△0.1)	(△10.7)

주: 1) 총지출은 비용과 비금융자산순취득을 합산한 금액임

정부운영표는 당해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수입’, ‘비용’, ‘비금융자산의 순취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정부운영표상 ‘수입’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손익계산서상 수익에서 ‘거래외 경제유량’(평가이익, 환산이익, 처분이익 등)을 제외한 금액이 포함된다. 반면에, ‘비용’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손익계산서상 비용에서 ‘거래외경제유량’(평가손실, 환산손실, 처분손실, 손상차손 등)을 제외한 금액이 포함된다. 한편, ‘비금융자산의 순취득’은 고정자산, 재고자산 등의 순투자(취득-처분)에서 고정자산소비를 차감한 금액이 기재된다.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

(단위 : 조원)



2015년 일반정부 재정통계 산출 결과, 총수입은 534.6조원(GDP 대비 34.3%)이며, 각 정부별 수입은 중앙정부 415.8조원(GDP 대비 26.7%), 지방정부 245.0조원(GDP 대비 15.7%), 내부거래 △126.3조원(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총지출은 515.1조원(비용 470.2조원 + 비금융자산순취득 44.9조원)으로, 각 정부별 지출은 중앙정부 403.2조원(GDP 대비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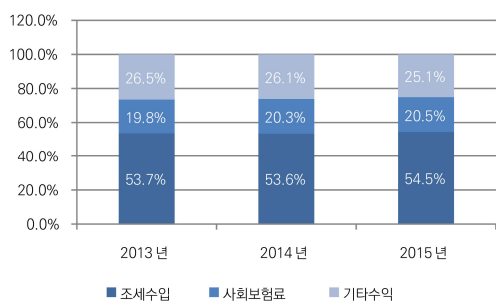
지방정부 238.1조원(GDP 대비 15.3%), 내부거래 △126.3조원으로 구성된다.

2015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순용자차입)는 19.5조원(GDP 대비 1.3%) 흑자로, 각 정부별 재정수지는 중앙정부 12.7조원(GDP 대비 0.8%), 지방정부 6.8조원(GDP 대비 0.4%)으로 모두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① 총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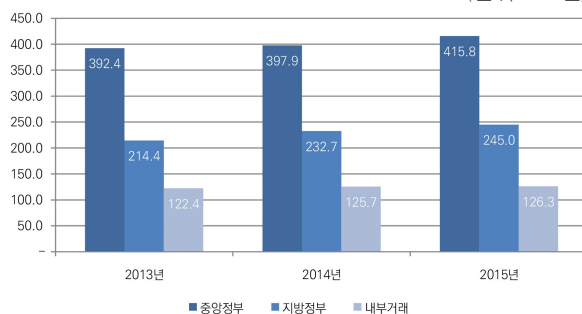
〈총수입 경제적 분류〉

(단위 : 조원)



〈총수입 부문별 분류〉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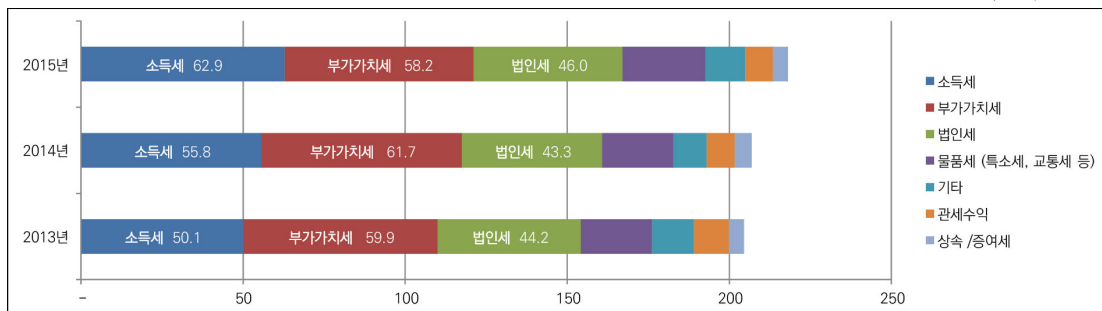


일반정부 총수입은 전년 대비 29.6조원(5.9%) 증가한 534.6조원이며, 조세 및 사회보험료 증가가 주된 증가 요인이다. 2015년 조세수입은 291.2조원으로 전년 대비 20.7조원(7.6%)이 증가했으며, 사회보험료 수입은 109.4조원으로 전년 대비 6.8조원(6.6%)이 증가하였다.

(조세수입) 2015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은 각각 218.2조원 및 73.0조원으로 집계되었고, 부문별 증감을 보면 중앙은 11.2조원(5.4%), 지방에서는 9.5조원(14.9%) 증가하였다. 중앙정부의 주요 조세항목별 추세를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7.1조원, 2.7조원이 증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3.5조원 감소하였고, 그 밖에 개별소비세 및 자산거래세가 각각 2.4조원, 1.5조원이 증가하였다. 지방정부의 경우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등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전년 대비 각각 4.3조원, 2.6조원 증가함에 따라 일반정부의 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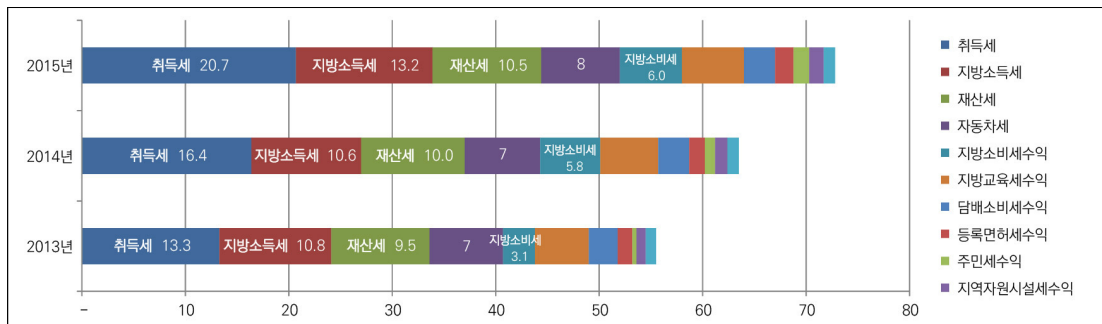
〈중앙정부 조세수입〉

(단위 : 조원)



〈지방정부 조세수입〉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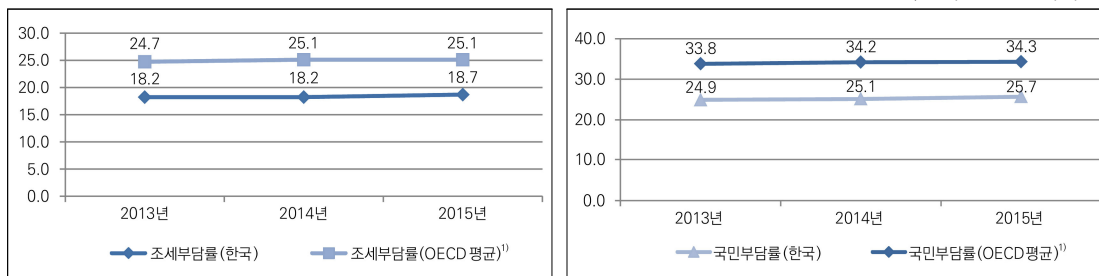


(사회보험료수익) 2015년 사회보험료수익은 국가회계·기금(국민, 사학, 고용, 산재 등) 62.2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 47.2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부문별 증감을 보면 국민연금 2.3조원, 공무원연금 0.6조원, 고용보험 0.6조원, 산재보험 0.2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조원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6.8조원 (6.6%) 증가하였다.

(국제비교) 2015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7%로 전년 대비 0.5%p 증가하였으며, OECD 평균 25.1%와 비교해볼 때 낮은 편이다. 또한, 2015년 한국의 국민부담률(조세수입+사회보험료)은 25.7%로 전년(25.1%) 대비 0.6%p 증가했지만, OECD 평균(34.3%)과 비교해볼 때 낮은 편이다.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단위 :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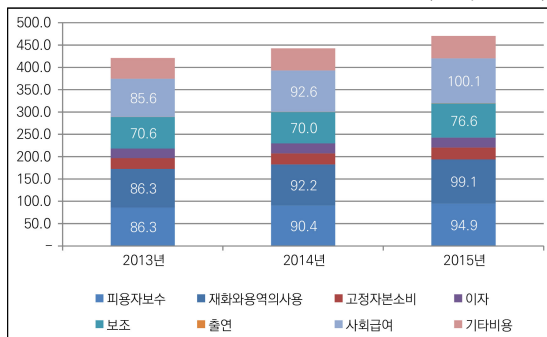


주: 1) 2015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OECD 평균은 잠정치

② 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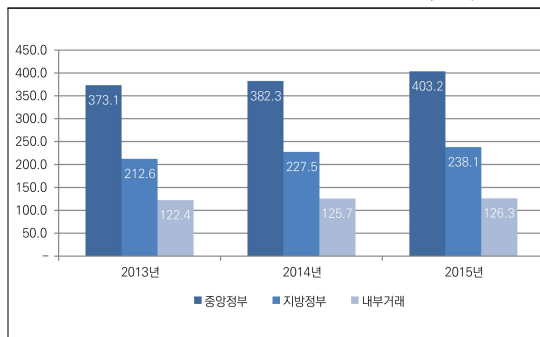
〈총지출 경제적 분류〉

(단위 : 조원)



〈총지출 부문별 분류〉

(단위 : 조원)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사회급여 100.1조원(비중 19.4%), 재화와용역의사용 99.1조원(비중 19.2%), 피용자보수 94.9조원(비중 18.4%), 보조 76.6조원(비중 14.9%), 비금융자산순취득 44.9조원(비중 8.7%) 등으로 구성된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총 30.9조원(6.4%) 증가했으며, 주요 계정별 증감을 보면, 재화와용역의사용 6.8조원(7.4%), 피용자보수 4.5조원(5.0%), 사회급여 7.5조원(8.1%)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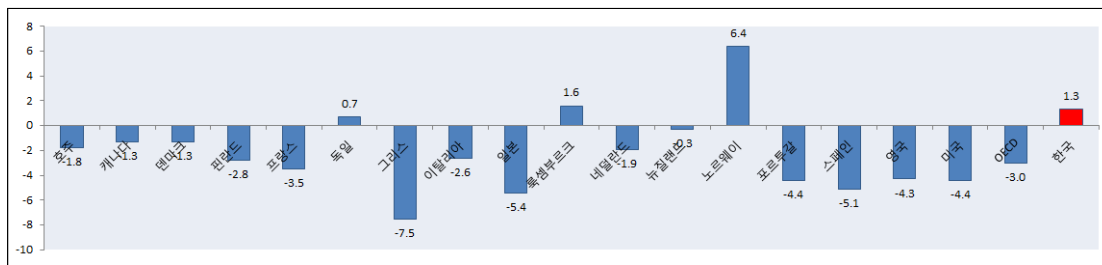
③ 재정수지

정부운영에 따른 결과인 재정수지는 ‘순운영수지’와 ‘순융자차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순운영수지’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되며, 2015년 우리나라의 순운영수지는 64.4조원 흑자(GDP 대비 4.1%)를 기록하여 정부운영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양호한 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순융자·차입’은 ‘순운영수지’에서 ‘비금융자산의 순취득’을 차감하여 산출되며, 2015년 우리나라의 ‘순융자·차입’은 19.5조원 흑자(GDP 대비 1.3%)를 기록하였다. ‘순융자·차입’은 국가 간 재정수지 비교 시 주로 활용되는 지표로, 한국의 재정수지는 OECD 평균 △3.0% 대비 양호한 편이다.

〈OECD 국가별 재정수지〉

(단위 : GDP 대비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0 database, 2016.11.

2) 일반정부 재정상태표

〈일반정부 3개년 재정상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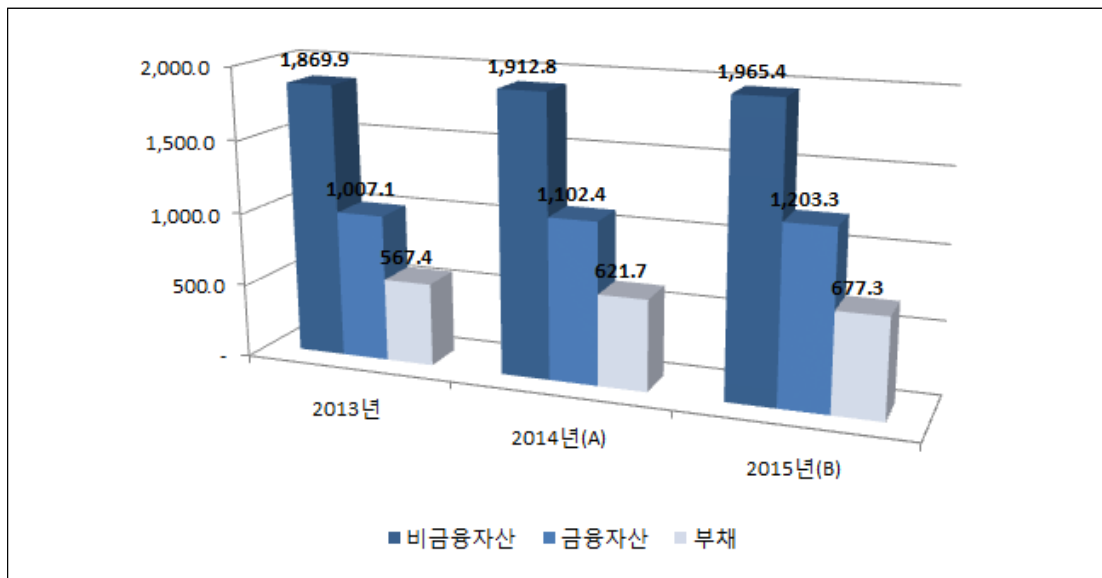
(단위 : 조원, %, %p)

	2013년	2014년(A)	2015년(B)	증감(B-A)	증감률(%)
□ 자산	2,877.0	3,015.2	3,168.7	153.5	5.1
(GDP 대비, %)	(201.4)	(203.0)	(203.3)	(0.3)	(0.1)
○ 비금융자산	1,869.9	1,912.8	1,965.4	52.6	2.7
(GDP 대비, %)	(130.9)	(128.8)	(126.1)	(△2.7)	(△2.1)
고정자산	1,044.1	1,070.1	1,093.1	23.0	2.2
재고자산	14.4	14.6	15.0	0.4	2.9
비생산자산	811.4	828.1	857.2	29.1	3.5
○ 금융자산	1,007.1	1,102.4	1,203.3	100.9	9.2
(GDP 대비, %)	(70.5)	(74.2)	(77.2)	(3.0)	(4.0)

	2013년	2014년(A)	2015년(B)	증감(B-A)	증감률(%)
현금및예금	196.8	198.4	216.2	17.8	9.0
채무증권	122.8	143.2	139.7	△3.5	△2.4
융자	159.2	161.6	162.9	1.3	0.9
주식및기타지분	398.5	435.9	506.1	70.2	16.1
파생금융상품	0.6	2.9	1.7	△1.2	△39.6
기타미수계정	129.3	160.5	176.6	16.1	10.0
□ 부채	567.4	621.7	677.3	55.6	8.9
(GDP 대비, %)	(39.7)	(41.9)	(43.5)	(1.6)	(3.8)
현금및예금	-	-	-	-	-
채무증권	449.3	484.8	524.8	40.0	8.2
융자	56.6	69.7	93.5	23.8	34.1
주식및기타지분	0.4	0.4	0.4	0.0	△8.4
파생금융상품	1.4	0.7	0.8	0.1	7.1
기타미지급계정	59.8	66.1	57.9	△8.2	△12.3

〈일반정부 3개년 자산,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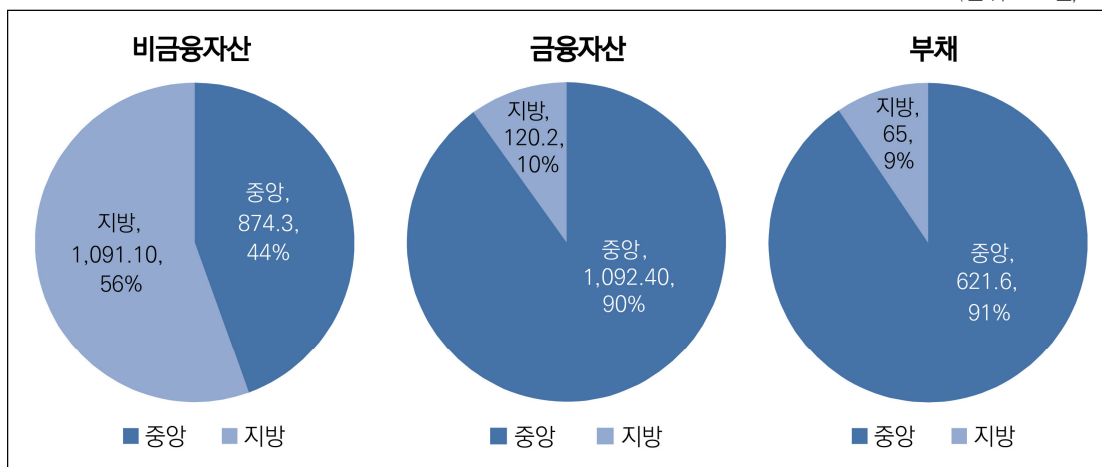
(단위 : 조원)



일반정부의 자산 및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는데, 2015년 부채는 전기 대비 55.6조원 (8.9%)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의 경우 각각 100.9조원(9.2%) 및 52.6조원 (2.7%) 증가하였다. 부채 증가 대비 금융자산의 증가가 큰 이유는 대부분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15년 38.6조원)에 기인한다.

〈부문별 자산/부채〉

(단위 : 조원, %)



① 비금융자산

일반정부의 비금융자산은 총 1,965.4조원(GDP 대비 126.1%)이며, 각 정부별로 중앙정부 874.3조원 (GDP 대비 56.1%), 지방정부 1,091.1조원(GDP 대비 70.0%)으로 구성된다. 비금융자산은 전년 대비 총 52.6조원 증가했는데, 여기에 고정자산소비 26.6조원을 가산하면 비금융자산에 대한 순투자(취득-처분)를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일반정부는 2015년 기준으로 비금융자산에 대략 79.2조원 (GDP 대비 5.1%)을 투자한 것으로 분석된다.

② 금융자산

일반정부의 금융자산은 총 1,203.3조원(GDP 대비 77.2%)이며, 각 정부별로 중앙정부 1,092.4조원 (GDP 대비 70.1%), 지방정부 120.2조원(GDP 대비 7.7%)으로 구분된다. 금융자산을 상품유형별로 구분하는 경우 주식및기타지분(42.1%), 현금및예금(18.0%), 기타미수계정(14.7%), 용자(13.5%), 채무증권 (11.6%) 등으로 구성된다. 주식및기타지분의 경우 전년 대비 70.2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국민연금

기금의 기금운용자산 증가와 주택도시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보유한 지분증권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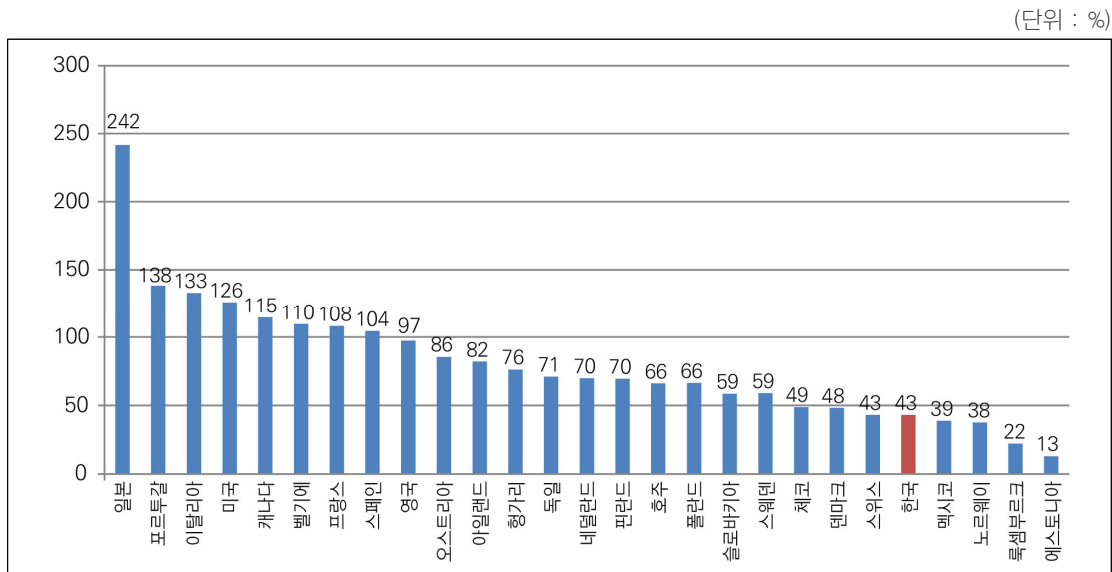
③ 부채

일반정부 부채는 총 677.3조원(GDP 대비 43.5%)이며, 각 정부별로 중앙정부 621.6조원(GDP 대비 39.9%), 지방정부 65.0조원(GDP 대비 4.2%)으로 구분되며, 상품유형별로는 채무증권(77.5%), 용자(13.8%), 기타미지급계정(8.5%)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부채 중 채무증권 및 용자는 전년 대비 40.0조원(8.2%), 23.8조원(34.1%) 증가했는데, 채무증권의 경우 일반회계 및 재정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증가(55.2조)가 주된 요인이다. 용자는 중앙정부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청약저축 11.7조원 증가 및 BTL 관련 미지급금이 0.3조원 증가함에 따른 효과가 크고, 지방정부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신설 및 증설시 금융기관 차입금(5.7조원 증가)으로 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용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는 주로 일반정부 부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부채 규모는 677.3조원으로(GDP 대비 43.5%), 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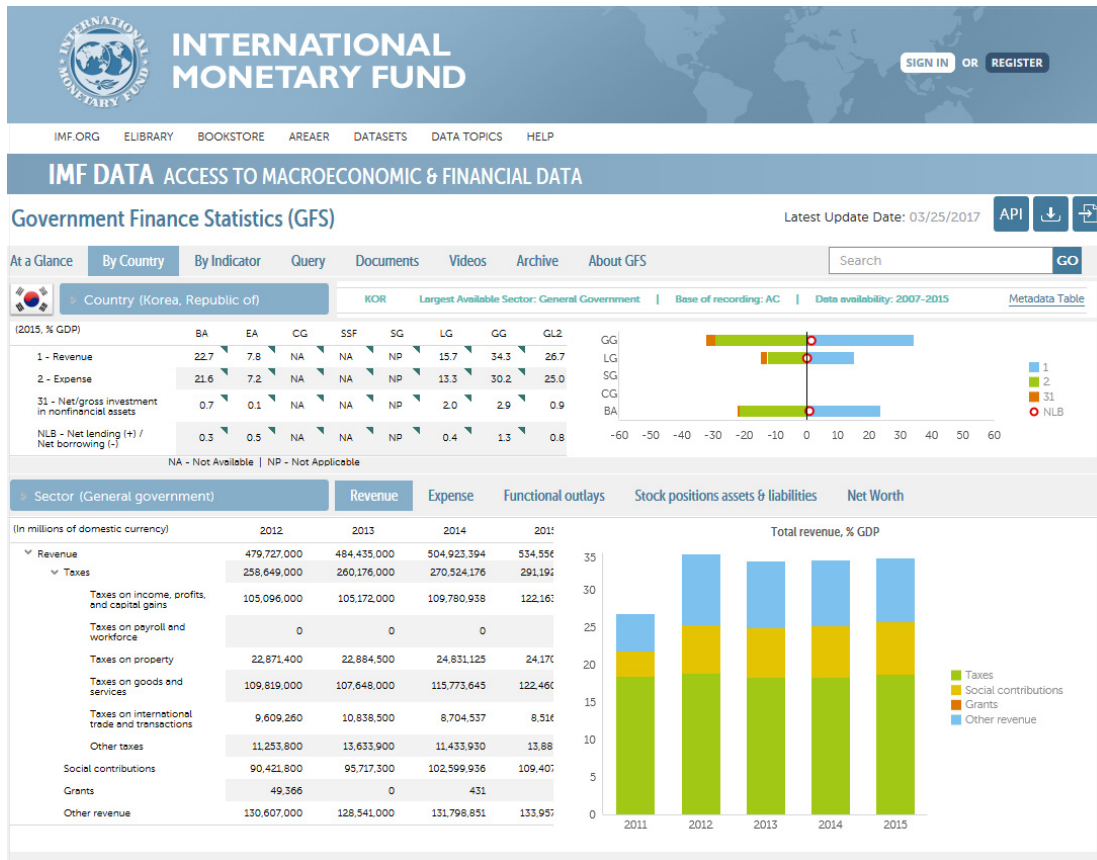
〈일반정부 GDP 대비 총금융부채 비율〉



출처: OECD, World Bank(15. 4Q)

라. 일반정부 재정통계 공시

정부는 매년 GFSM 2001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통계를 산출해서 IMF에 제출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국가별 재정통계 자료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data.imf.org/?sk=89418059-d5c0-4330-8c41-dbc2d8f90f46&sId=1435762628665>

2 재정통계 브리핑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5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D3) 산출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통계 브리핑을 처음 발간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정통계의 다양한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등으로 그 성과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센터에서는 앞으로 산출되는 재정통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재정통계 브리핑에 담아 정기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2016년 12월 23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15년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회계연도부터 IMF의 국제통계작성기준(PSDS)에 따라 공공부문의 부채를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포괄범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부채가 산출되고 있다.

2015회계연도의 비금융공공부문부채(D3)는 1,004조원(GDP 대비 64.4%)이며, 일반정부부채(D2)는 676조원(GDP 대비 43.4%)으로 OECD 국가 중 부채수준은 양호한 편이나 매년 높은 증가추세(평균 10.2%)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시점의 부채에 대한 관리뿐 아니라 추계분석을 통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부채의 증가규모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부채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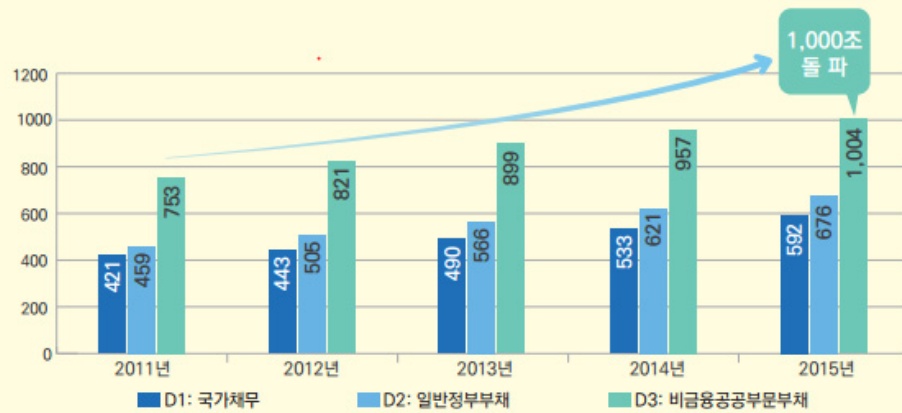
2015회계연도 정부의 포괄범위에 따른 부채(총부채¹⁾) 산출결과를 다음과 같음

유형	2015년규모(GDP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관리기준
국가채무 (D1)	592조원 (37.9%)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일반정부부채 (D2)	676조원 (43.4%)	D1+비영리공공기관 (예보, 농어촌공사 등)	PSDS 발생주의	국제 비교 (IMF, OECD)
비금융공공부문부채 (D3)	1,004조원 (64.4%)	D2+비금융공기업 (LH, 한전 등)	PSDS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

¹⁾ 총부채(Gross Debt/Liabilities)란 채무상종의 형태를 띤 모든 종류의 부채로, 채무상종(Debt Instruments)은 채무자가 미래의 특정시점에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로 채권, 차입금, 미지급금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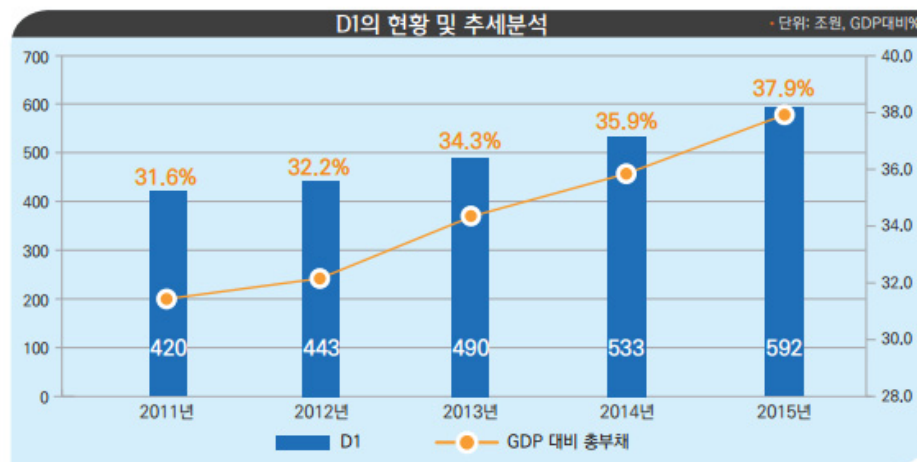
2011회계연도부터 우리나라의 부채별 산출금액의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으며, D3는 2015년에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으며, D1, D2, D3의 부채 종류별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함

부채종류별 총부채의 5개년 추세 · 단위: 조원



D1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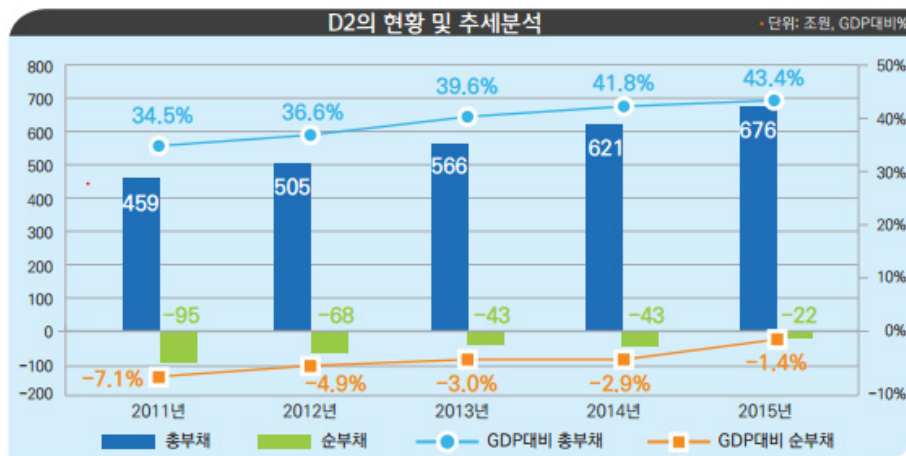
2015회계연도의 D1은 592조원으로 전년대비 59조원(전년대비 11.1%)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채가 전년 대비 53조원 증가(과거 5개년 국채 평균 증가액 37조원)함에 주로 기인함



D2 분석

2015회계연도의 D2는 676조원으로 전년 대비 55조원(전년 대비 8.9%) 증가하였으며, D1과 함께 D2를 구성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는 전년 대비 2조원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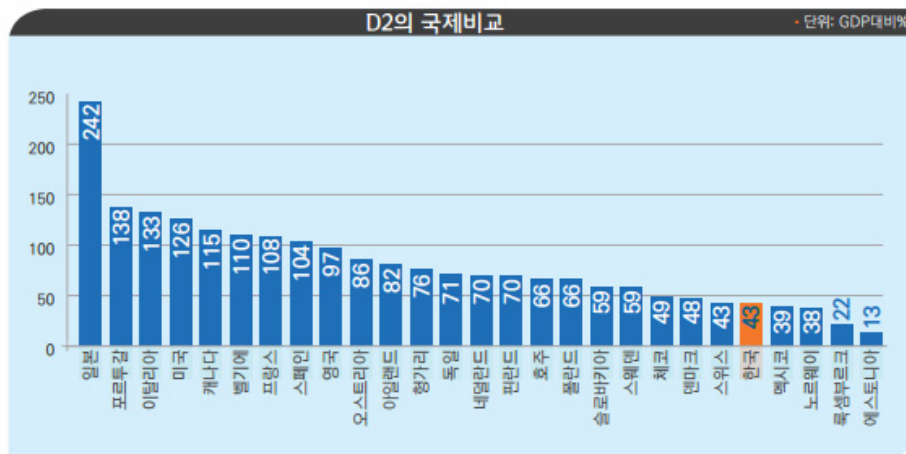
또한 D2에서 그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을 차감한 순부채²⁾가 음(-)의 값을 보이므로 부채보다 금융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사회보장성금의 금융자산으로 인한 효과임



²⁾ 순부채(Net Debt Liabilities)는 총부채에서 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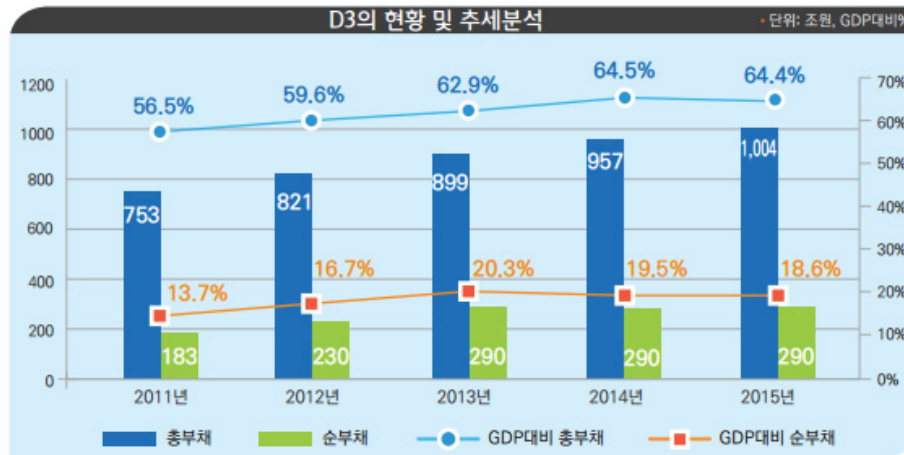
D2 국제비교

D2는 국가간 비교 시 주로 사용하는 지표로 OECD 국가들의 부채규모 대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



D3 분석

2015회계연도의 D3는 1,004조원으로 전년대비 47조원(전년대비 4.9%) 증가하였으며, D3에서 비금융공기업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공공기관정상화 대책에 따른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감소 효과(LH △5.3조원, 한국가스공사 △4.5조원, 한전 △3.5조원 등)가 국제 증가분을 상쇄하여 D3의 증가폭 감소



3 2016회계연도 상장공기업 결산

2016회계연도 상장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보고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다. 상장공기업은 주주총회 승인으로 감사보고서가 확정되며, 확정된 감사보고서는 기획재정부에 결산자료로 제출된다. 상장공기업은 당기에 유가하락 영향으로 매출원가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이러한 영향으로 자산손상이 발생하였다. 기관별 자세한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전력공사

<재무상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A)	2016(B)	증감(B-A)	증감률(B-A)/A
자산	175,257,358	177,837,042	2,579,684	1.5
부채	107,314,884	104,786,497	△2,528,387	△2.4
자본	67,942,474	73,050,545	5,108,071	7.5

〈경영성과〉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A)	2016(B)	증감(B-A)	증감률(B-A)/A
매출액	58,957,722	60,190,385	1,232,661	2.1
영업이익	11,346,732	12,001,599	654,866	5.8
당기순이익	13,416,375	7,148,327	△6,268,048	△46.7

한국전력공사는 차입금 및 사채 상환 등으로 유동자산이 2.3조원 감소하였지만 전력설비투자 증가로 비유동자산이 4.9조원 증가함에 따라 자산은 2.6조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차입금 및 사채 상환 등으로 2.5조원 감소하였다. 전기 대비 매출액은 1.2조원 소폭 증가하였으나 유가하락 등에 따라 매출원가 등 영업비용이 0.6조원 증가에 그쳐 12.0조원의 영업이익(전기 대비 0.7조원 증가)을 기록하였으며, 전기 삼성동 건물과 부지매각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8.6조원)의 기여효과 및 법인세비용 1.9조원의 감소로 인하여 7.1조원의 당기순이익(전기 대비 6.3조원 감소)을 기록하였다.

나. 한국가스공사

〈재무상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A)	2016(B)	증감(B-A)	증감률(B-A)/A
자산	42,385,340	39,927,836	△2,457,504	△5.8
부채	32,328,396	30,541,350	△1,787,046	△5.5
자본	10,056,943	9,386,486	△670,458	△6.7

〈경영성과〉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A)	2016(B)	증감(B-A)	증감률(B-A)/A
매출액	26,052,724	21,108,116	△4,944,608	△19.0
영업이익	1,007,812	917,634	△90,178	△8.9
당기순이익(손실)	319,190	△673,558	△992,748	△311.0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원료비 미수금 회수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함에 따라 자산이 1.7조원 감소하였고, 재고단가 하락 및 전기 대비 연말 가스 판매량 증가로 인해 재고자산이 0.7조원 감소하였다. 또한, 설비투자는 증가하였으나 감가상각 및 자산 손상차손이 발생함에 따라 유무형자산은 0.5조원 감소하였으며, 동절기 소요자금 대비 등으로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은 0.5조원 증가하였다. 부채의 경우 장단기 차입금 규모의 감소 등으로 인해 1.8조원 감소하였다. 유가하락으로 인해 전기 대비 매출액 및 매출원가 모두

감소하여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소폭 감소한 0.9조원을 기록하였고, 자원개발 자산의 손상차손이 1.0조원 발생(전기 대비 0.9조원 증가)함에 따라 당기순손실 0.7조원을 기록하였다.

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상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A)	2016(B)	증감(B-A)	증감률(B-A)/A
자산	4,843,832	5,133,805	289,973	6.0
부채	3,122,178	3,328,802	206,624	6.6
자본	1,721,654	1,805,003	83,349	4.8

〈경영성과〉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A)	2016(B)	증감(B-A)	증감률(B-A)/A
매출액	2,001,946	1,719,867	△282,079	△14.1
영업이익	209,936	161,656	△48,280	△23.0
당기순이익	115,819	126,707	10,888	9.4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건설공사 투자비 등이 증가하여 자산이 2,900억원 증가하였고, 부채는 사채발행 등으로 2,066억원 증가하였다. 전기 대비 매출액은 전반적인 판매단가의 하락에 따라 2,821억원 감소하였고, 유가하락 등에 따라 영업비용이 2,338억원 감소하여 영업이익이 483억원 감소한 1,616억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09억원 증가한 1,267억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사내근로 복지금 출연금 관련 소송 승소에 따른 충당부채환입, 투자부동산 처분이익의 증가 및 세전이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비용 감소 등에 기인한다.

4 공익법인 회계기준 도입 예고

기획재정부는 201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도입을 예고하였다. 그동안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사후관리제도가 있지만 통일된 회계기준이 없어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6월 중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 관련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에 적용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15인을 위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심의위원회는 공익법인 회계제도 운영, 회계기준 해석, 관련 법령에 대한 제·개정 등에 대한 심의를 수행할 계획이다.

5 2015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발간

기획재정부는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발간하고 있다.

「2015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통해 '86GFS에 따른 2015년도 중앙정부 결산 통합재정수지와 '01GFS에 따른 2015년도 일반정부 결산 재정수지를 발표하였고, 중앙정부 월별·연도별 재정통계 추이분석이 추가되었다. 2015회계연도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는 0.2조원 적자,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19.5조원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5년도 중앙정부 결산 통합재정수지(현금주의)

(단위 : 십억원)

구 분	수입(A)	지출(B)	통합재정수지(A-B)
일반회계	219,199	205,968	13,232
기타특별회계	14,155	42,044	△27,888
세입세출외	54	190	△136
기금	103,306	88,042	15,264
기업특별회계	2,471	3,107	△636
합 계	339,186	339,351	△165
(GDP 대비 %)	(21.8)	(21.8)	(△0.01)

주: 2015년 GDP 규모: 1,558,6조원(한국은행, 잠정)

나. 2015년도 일반정부 결산 재정수지(발생주의)

(단위 : 조원, %)

구 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내부거래	일반정부
		지방재정	지방 교육재정	내부 거래	합계		
□ 총수입(A)	415.9	203.4	54.9	△13.3	245.0	△126.3	534.6
(GDP 대비, %)	(26.7)	-	-	-	(15.7)	-	(34.3)
□ 총지출(B+C)	403.2	193.1	58.3	△13.3	238.1	△126.3	515.1
(GDP 대비, %)	(25.9)	-	-	-	(15.3)	-	(33.0)
(1) 비용(B)	389.5	164.1	56.1	△13.3	207.0	△126.3	470.2
(GDP 대비, %)	(25.0)	-	-	-	(13.3)	-	(30.2)
(2) 비금융자산순취득(C)	13.7	29.0	2.2	-	31.2	-	44.9
(GDP 대비, %)	(0.9)	-	-	-	(2.0)	-	(2.9)
□ 재정수지(A-B-C)	12.7	10.3	△3.5	-	6.8	-	19.5
(GDP 대비, %)	(0.8)	-	-	-	(0.4)	-	(1.3)

주: 2015년 GDP규모: 1,558.6조원(한국은행, 잠정)

다. 2015년도 일반정부 자산과 부채

(단위 : 조원, %)

	중앙정부	지방정부				내부거래	일반정부
		지방재정	지방 교육재정	내부 거래	합계		
□ 자산	1,966.7	1,118.7	93.7	△1.0	1,211.3	△9.3	3,168.7
(GDP 대비, %)	(126.2)	-	-	-	(77.7)	-	(203.3)
□ 부채	621.6	48.2	17.9	△1.0	65.0	△9.3	677.3
(GDP 대비, %)	(39.9)	-	-	-	(4.2)	-	(43.5)

03

특집 - OECD 보고서

※ 이 섹션은 OECD 저널 등에 실린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관한 해외 논문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논문 개요

(등재) OECD Journal on Budgeting – Volume 2016/1

(제목) Accrual practices and reform experiences in OECD countries –Results of the 2016 OECD Accruals Survey

(저자) Delphine Moretti – OECD 예산 및 공공지출과 선임정책분석관

OECD 사무국은 2003년부터 매년 ‘OECD 발생주의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많은 수의 OECD 회원국이 최근 발생주의 개혁을 이행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발생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2016 OECD 발생주의 설문조사’는 OECD 회원국들이 그들의 중앙정부 수준에 채택하고 있는 회계제도와 예산제도, 특정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과 재무제표 통합 절차, 회계 기준 제정 체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는 여기에 더하여 발생주의 개혁의 계획과 이행 과정에서의 도전과제, 연관된 도입효과에 대한 조사결과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16 OECD 발생주의 설문조사’의 결과는 국제회계사연맹(IFAC)과의 공동 발행물 및 ‘Accountability! Now! 기획*’의 기반이 될 예정이다.

* Accountability! Now! 기획: 국제회계사연맹(IFAC)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기획으로, 정부의 회계기준과 재무보고의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공공부문의 재무관리 및 회계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각국 정부에게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도입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설문 대상은 설문 당시 OECD 회원국 전체인 34개국의 재무부 또는 이와 동등한 관계기관이며, 설문 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었다. 설문 결과는 크게 발생주의 회계제도 현황, 발생주의 예산제도 현황, 재무보고서와 예산서의 제도적 범위, 기준 제정과 감사 현황, 발생주의 개혁 이상 5개로 나누어진다. 다음은 각각의 설문 결과를 발췌·요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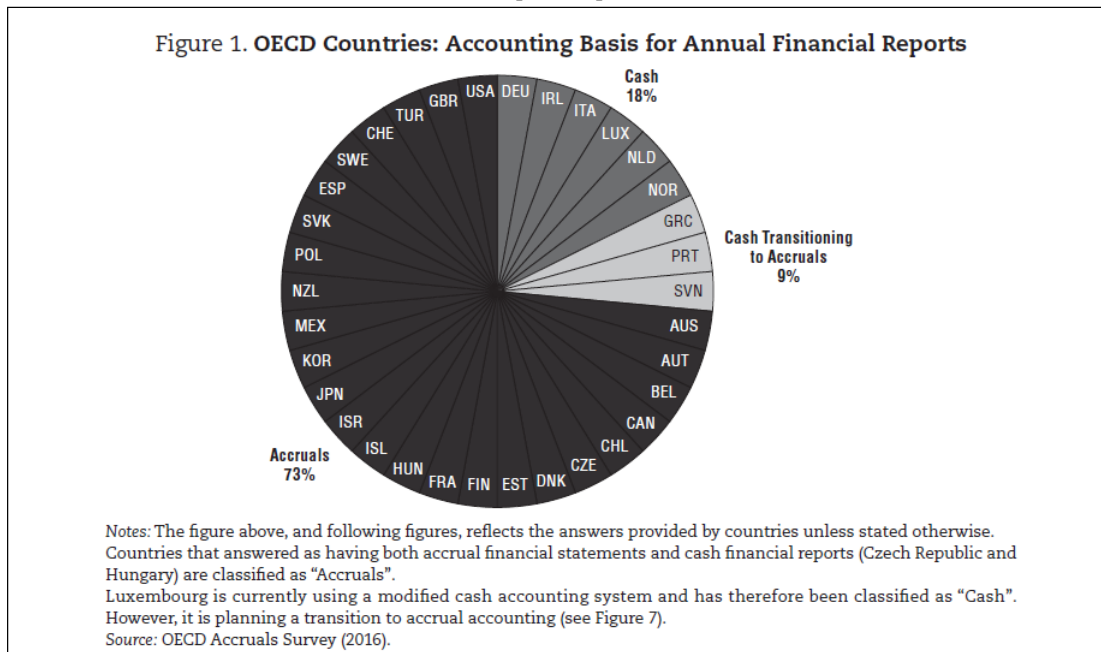
1 발생주의 회계제도 현황

가. 회계기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5개국(73%)은 매년 재무보고서를 발생주의 회계에 기초하여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여러 가지 형식을 갖고 있는데,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는 발생주의를 재정정책과 예산편성, 재무관리 및 재무보고의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현금주의 결산보고서(accounts)에 대한 보충적 정보로 작성한다. 그리고 현금주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주요 결산보고서로서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가들도 있다.

다른 3개국(9%)은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 6개국(18%)은 현금주의 회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금주의 회계를 적용하고 있는 6개국 중 아일랜드와 노르웨이는 부처 또는 정부기관에 대해 현금주의 보고 외에 발생주의 보고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 이탈리아와 룩셈부르크는 비록 진전이 많지 않지만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하기 위한 개혁 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단 2개국(독일, 네덜란드)만이 발생주의를 채택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림 1]



나. 제출 대상 재무보고서 유형

현금주의 회계를 따르거나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 중인 국가들은 연말에 하나의 주요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은 예산과 실제 비교 보고서(comparison of budget and actuals)를 제공하거나 현금흐름표를 주석과 함께 제공하며, 그중 독일,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는 예산 결과 보고서에 대한 보충적 정보로 단순화되었거나 불완전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한 모든 국가들이 대차대조표(혹은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혹은 재무성과표)와 이에 대한 공시사항을 작성하며, 일부 소수 국가들은 현금흐름표와 순자산변동표까지 작성한다. 이와 같이 일부 보고서의 작성이 생략되고 있는 것은 현금흐름표의 경우 예산과 실제 비교 보고서(comparison of budget and actuals)와 같은 다른 현금주의 보고서와 중복된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순자산 변동내역의 경우 주석으로 공시된다는 점과 함께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려면 공공부문의 재무제표가 최대한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재무보고서의 내용

현금주의로 보고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현금 잔액, 채무, 보증 및 약정과 같은 현금 거래 이외의 재무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독일과 노르웨이는 특정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공시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추가로 천연자원의 가치까지 예산서에 공시하고 있다.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 중에 있는 3개국은 미지급비용과 미수조세(그리스, 슬로베니아), 고정자산(포르투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현금주의로 운용 중인 국가들이 자산과 부채를 실시하고 그 금액을 측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발생주의로 보고하는 국가들의 경우 그들의 대차대조표에 금융부채와 금융자산, 미지급비용은 예외 없이 보고하는 데 비해, 다른 항목들은 국가마다 보고 여부가 다르게 나타났다.

토지와 건물(92%), 사회기반시설(92%), 미수조세(85%), 국방자산과 재고자산(79%), 파생상품(75%)의 경우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대다수의 국가가 공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 항목들의 실시 및 측정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의미한다.

공무원과 군인에 대한 연금부채의 경우 39%의 국가가 대차대조표에 기록하고 14%의 국가는 주석에 공시하고 있는데, 나머지 36%의 국가는 이를 전혀 공시하지 않고 있다. 대차대조표에 기록하지 않는

국가들 중 일부는 근로자(공무원 혹은 군인)가 실질적인 계약상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53%의 국가가 보고하지 않고 있는데, 모두 유사하게 사회보장급여가 법적의무와 의제의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국제 기준에 참고 가능한 회계처리 방법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관협력사업(PPPs)의 경우, OECD 회원국들 중에서 36%의 국가가 민관협력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대차대조표에 보고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계약의 기록, 관련 채무의 평가에 대한 기술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연금 또는 사회보장급여와 같이 해당 계약과 관련된 잠재적 채무에 대한 보고를 꺼리는 것일 수도 있다.

천연자원, 유산자산의 경우 각각 국가 중 11%, 43%가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이 분야에 대해 참고할 만한 회계처리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과 신뢰성 있고 유용한 가치평가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표 1〉 OECD 국가: 연간 재무제표상 특정 자산 및 부채의 보고 사례

구분	대차대조표	공시	보고하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미수조세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ISL), 이스라엘(ISR), 일본, 한국,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GBR), 미국	벨기에, 멕시코	핀란드, 포르투갈	
천연자원	이스라엘(ISR), 슬로베니아, 스위스	에스토니아,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체코,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GBR)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일본, 슬로바키아
토지 건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이슬란드(ISL)	

〈표 1〉의 계속

구분	대차대조표	공시	보고하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헝가리, 이스라엘(ISR),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GBR), 미국			
사회기반시설, (민관협력사업 제외)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스라엘(ISR),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GBR), 미국		칠레, 그리스, 아이슬란드	
민관협력 사업의 자산과 부채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영국(GBR), 미국	체코, 헝가리, 멕시코, 스페인	벨기에, 칠레, 그리스,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유산자산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GBR)	이스라엘(ISR), 한국, 미국	벨기에, 칠레, 덴마크,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ISL), 멕시코, 포르투갈, 스위스, 터키	에스토니아, 일본, 슬로바키아
국방자산, 재고자산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헝가리, 이스라엘(ISR),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GBR), 미국		칠레,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ISL), 한국, 스위스	
파생상품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이스라엘(ISR), 일본, 한국,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GBR), 미국	캐나다, 헝가리	그리스, 아이슬란드(ISL), 포르투갈	멕시코, 폴란드

〈표 1〉의 계속

구분	대차대조표	공시	보고하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호주, 캐나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ISR), 아이슬란드(ISL), 한국,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GBR), 미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칠레, 체코, 덴마크, 그리스,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헝가리, 일본, 폴란드
사회보장급여	캐나다, 에스토니아, 프랑스, 이스라엘(ISR), 일본,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헝가리,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ISL), 한국, 멕시코,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GBR)	체코, 슬로베니아

주: 호주의 천연자원은 주정부(즉, 지방 정부)가 소유하므로 연방정부 재무제표에 보고되지 않음

출처: OECD 발생주의 설문조사(2016), 발생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또는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 중인 국가를 기준으로 한 28개국의 답변을 기초로 함

2 발생주의 예산제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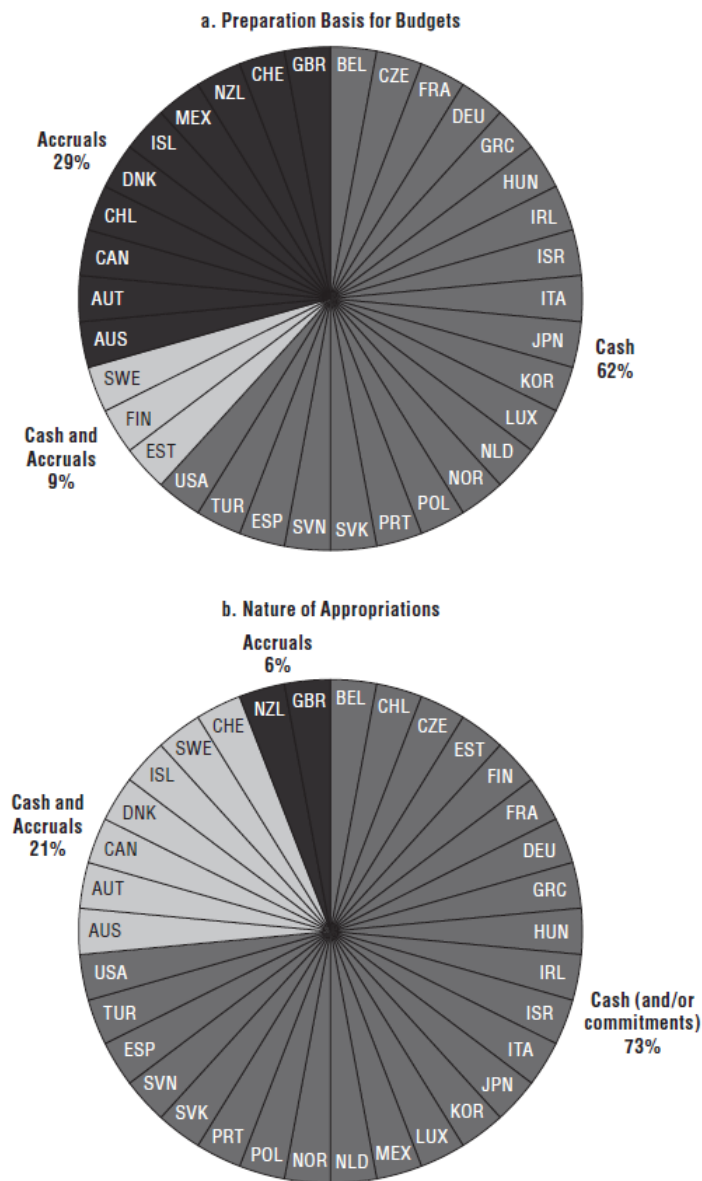
대다수의 OECD 회원국은 현금주의 또는 수정된 현금주의 기준으로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의 a). 21개국(62%)은 예산서 및 예산배정(appropriations)을 작성하는 데 현금주의 기준을 사용하며, 3개국(9%)은 일부 항목을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구성한 예산서를 작성한다.

10개국(29%)은 예산 편성을 위해 발생주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 중 호주,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의 경우 모든 유형의 예산 재무제표를 제출하며,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칠레, 멕시코의 경우 불완전하거나 단순화시킨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발생주의 예산배정의 사용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그림 2의 b).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사용하는 국가 중 뉴질랜드와 영국은 완전 발생주의 예산배정(full accrual appropriation)을 사용하는 데 비해,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는 발생주의 예산배정(accrual appropriations)과 현금 예산배정(cash appropriations)을 혼용하며, 캐나다, 칠레, 멕시코의 경우 현금 예산배정만 사용한다. 이는 국가들이 충당부채, 감가상각과 같은 발생주의 평가액(accruals valuations)의 변동성과 재량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며, 발생주의 추정액을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현금 예산배정이 부처와 부서가 소비하는 자원을 보다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

Figure 3. OECD Countries: Selected Budgeting Practices



Note: (Figure 3.a) Sweden and Finland are presented in figure in the “Cash and Accruals” category as the budget includes both accrual and cash elements, Estonia is planning a transition to accrual accounting to be completed by 2017.
 Source: OECD Accruals Survey (2016).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회계 및 예산 제도에는 두 가지 주도적인 모델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거의 절반에 달하는 국가(50%)가 현금주의 예산서(cash budgets), 예산 집행 보고서(budget execution reports),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3분의 1의 국가(32%)는 발생주의 예산서와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여기서 발생주의 예산서는 발생주의나 현금주의 중 하나를 적용하거나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모두를 적용한 예산배정(appropriations)을 말한다. 나머지 국가(18%)는 현금주의 예산서(cash budgets)와 재무보고서를 작성한다.

〈표 2〉 OECD 국가: 연간 재무보고서의 회계기준과 예산서의 작성 기준

구분	국가
발생주의 재무제표와 발생주의 예산서(1)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스위스,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영국(GBR), 아이슬란드(ISL), 멕시코, 뉴질랜드
발생주의 재무제표와 현금주의 예산서(2)	벨기에, 체코, 스페인, 그리스,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스라엘(ISR), 일본, 한국,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터키, 미국
현금주의 재무보고서와 현금주의 예산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주: (1)은 2017년을 기준으로 발생주의 예산제도로 전환 중 에스토니아를 포함한다.

(2)는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재무제표로 전환 중인 국가들(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베니아)과 현금주의 요소와 발생주의 요소로 구성된 발생주의 예산편성으로 전환 중인 국가들(스웨덴, 핀란드)을 포함한다.

출처: OECD 발생주의 설문조사(2016), 발생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또는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 중인 국가를 기준으로 한 28개국의 답변을 기초로 함

3 재무보고서와 예산편성의 제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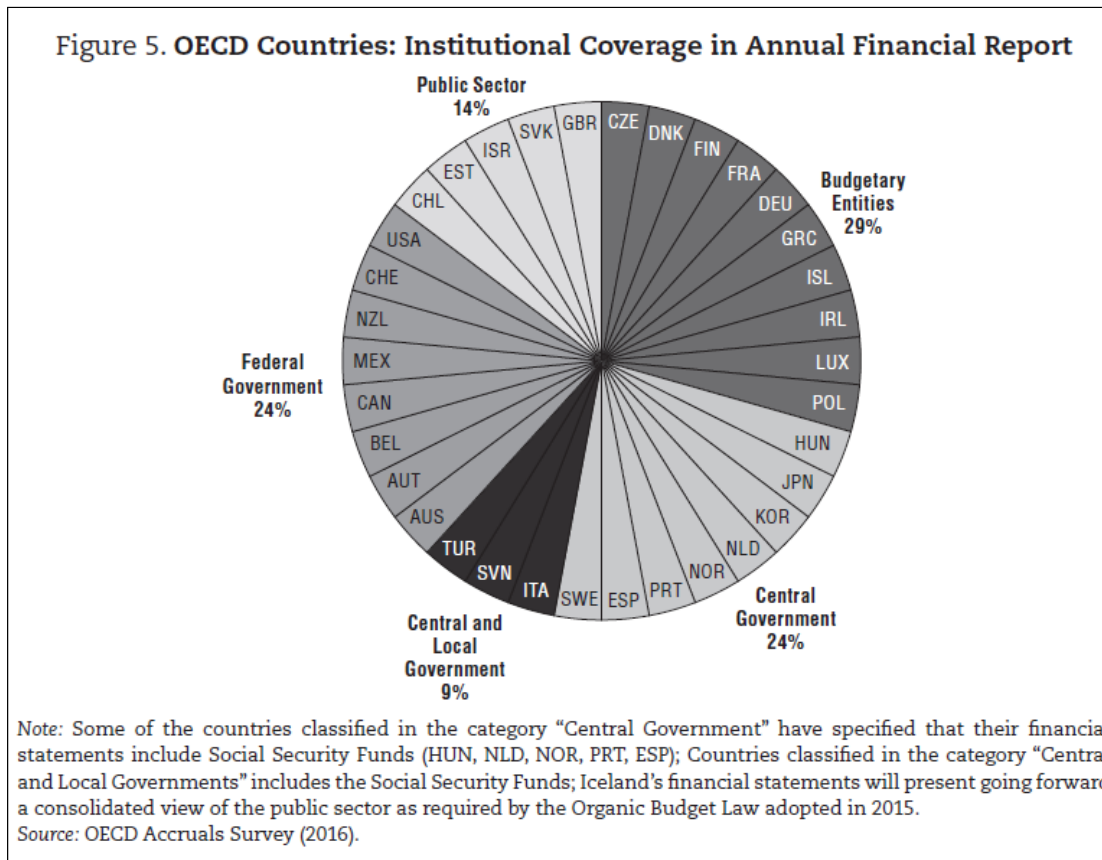
어떤 회계기준을 따르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공 재정의 전체 개관을 정부의 각 수준별로 재무제표에 제시하는 국가는 매우 드물다(〈그림 3〉). 스펙트럼의 한 쪽 끝에 있는 5개국(14%)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준, 국영기업(state owned corporations)을 포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른 한 그룹인 8개국(24%)은 연방 정부가 권한(통제)을 행사하는 모든 실체를 포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스펙트럼의 다른 한 쪽 끝에 있는 10개 국가 중 8개국은 예산 실체만 연간 재무제표에 포함된다.

발생주의 예산제도와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모두 시행 중인 국가의 경우 다른 그룹에 비해 재정 보고

서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해당 그룹 내의 국가 중 80%는 일반정부, 연방 정부, 또는 공공부문 전체를 포괄하는 재무제표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무제표는 예산서에 비해 더 넓은 범위로 작성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다수의 정부들은 예산서를 이와 유사한 범위로 만들지 않는다. 범위가 일치되지 않는 것은 예산서와 재무제표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산서는 주로 입법부가 지출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인 반면, 재무제표는 경우에 따라 공기업과 하위 정부 (sub-national governments)를 포함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재무적 상황에 대해 보다 폭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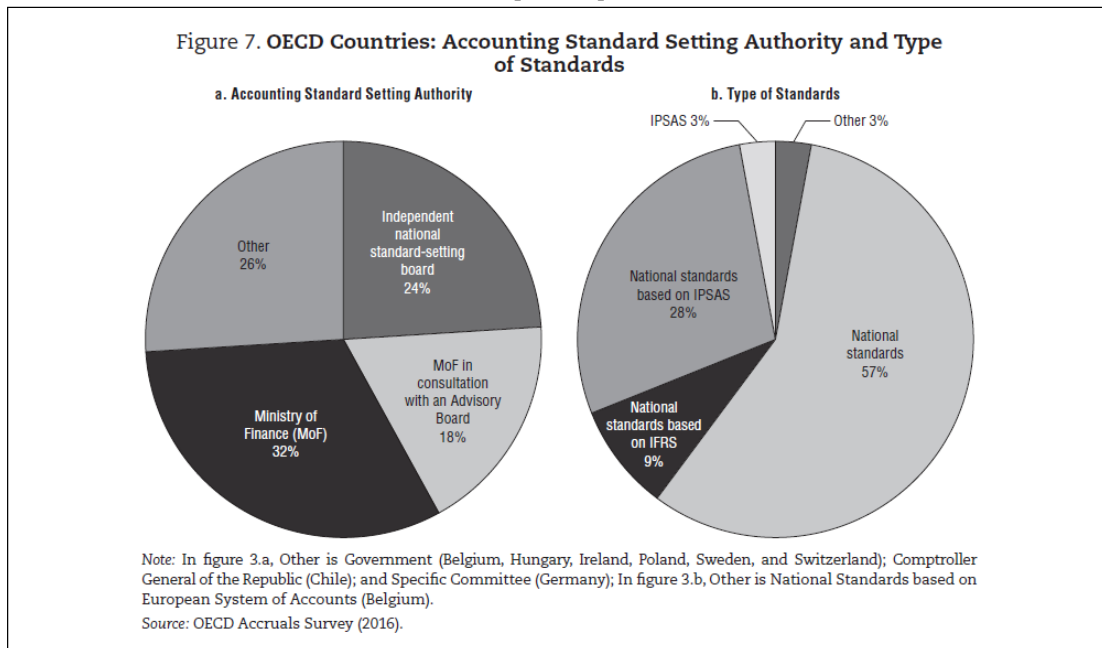
4 기준 제정과 감사 현황

가. 기준 제정 현황

OECD 회원국 중 절반 정도가 재무부에서 회계기준을 제정한다([그림 4]의 a). 재무부가 직접 회계 기준을 제정하거나(사례 중 32%), 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정(국가들 중 18%)하는 방식을 통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이스라엘, 멕시코의 경우 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책임을 독립적인 국립 기준제정위원회에게 맡기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가 자국의 회계기준을 개발하고 있음에도 국제적인 기준(IFRS, IPSAS, 또는 GFISM, ESA)을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의 b). 이들은 공시의 양을 제한하거나(예: 스웨덴), 예산서와 재정통계의 범위가 일치하도록 재무제표의 범위를 규정하거나(영국, 호주, 뉴질랜드), 자국의 법령 체계와 공공정책의 특징을 반영하는 등의 여러 가지 편차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국 회계기준을 보다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유일하게 IPSAS를 직접 채택한 스위스에서도 정부 내각이 IPSAS와의 차이를 승인할 수 있다.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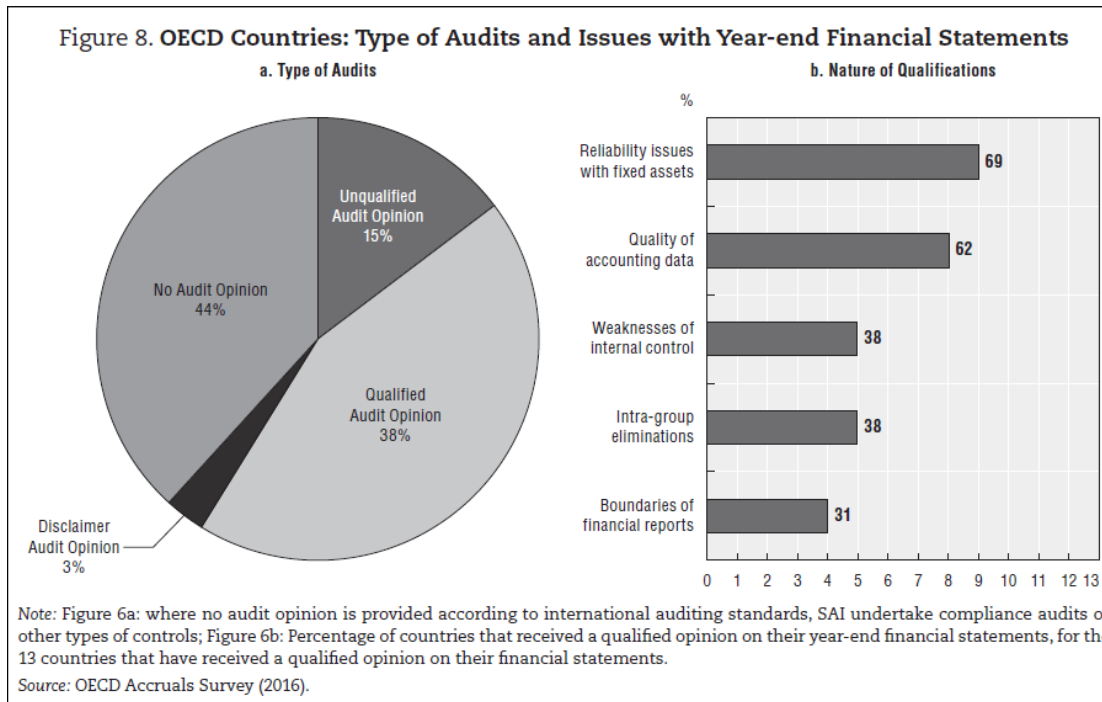


나. 감사 현황

모든 OECD 회원국의 연간 재무보고서는 어떤 형태로든 외부통제 및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그림 5의 a). 응답자의 대다수(56%)는 그들의 최고감사기구(supreme audit institutions)가 국제 감사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재무제표가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으로 표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외 국가들은 대개 헌법 또는 법률 형태의 요구사항이나 재무 통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고감사기구가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감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감사 의견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들 중 대다수가 한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의 b). 대부분의 경우 고정자산(특히, 국방자산)의 실사 및 평가, 회계 자료의 전반적인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 한정 의견이 나왔으며, 정부 재무보고의 범위와 내부거래 제거(intra-group eliminations)와 관련된 문제도 절반에 가까운 국가에서 언급되었다. 응답자들은 최고감사기구와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이 향후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시행과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림 5]



5 발생주의 개혁

가. 개혁 현황

OECD 발생주의 설문조사(2003)를 처음 수행하였을 당시에는 24%의 국가만이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개혁 프로그램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대부터 공공부문의 회계제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 다른 그룹의 국가들은 개혁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답하였는데, 그 개혁 중 일부는 유럽 공공부문 회계기준(EPSAS)의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 매우 적은 수의 국가만이 발생주의 개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정치적 지원이 부족하며, 효익이 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독일), 현금주의에 따른 예산서 및 재무보고서가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네덜란드).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은 보통 광범위한 공공관리개혁 정책의 일부로,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에서 자주 언급된 개혁의 동기는 공공재정에 대한 올바른 전망의 제시, 정부 운영의 전부원가 평가, 성과 문화의 정착 또는 강화, 공공 관리의 현대화이다.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했거나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더하여 발생주의 예산제도로 전환 중인 몇몇 국가는 모든 재정 보고서(통계 등)에 대해 표시와 작성 기준을 유사하게 만드는 것을 동기로 삼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혁의 준비, 감시,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은 재무부로 나타났다.

나. 개혁의 과제

국가들은 개혁을 실행하는 데 여러 가지 공통적인 과제들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자산과 부채의 식별과 평가는 개혁의 준비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로 간주되는데, 이는 대부분 국가가 소유, 식별하고 있는 자산(특히, 비금융자산)에 대한 신뢰성 있고 완전한 기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에서 새로운 IT 시스템의 구축이 시행 단계의 과제로 나타났다. 회계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되면 새로운 회계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이 요구되고 이로 인한 과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정부들이 개혁에 대해 단계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발생주의 회계제도로

전환하였다. 정부 대차대조표의 최초 공표 이후 몇 년 뒤에 국방자산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수행한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가 대차대조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였다. 일부 국가(예, 덴마크)는 완전 시행을 진행하기 이전에 시험 단계 또는 제한된 범위의 시험운영 기간을 두었다.

재무부 등 중앙 기관의 강력한 리더십, 효과적인 프로젝트 관리 및 조정, 개혁의 실행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인적자원 관리와 능력 함양 역시 공통된 과제였는데, 국가들은 특히 발생주의 회계, IT 시스템, 통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 개혁 목표의 달성

발생주의 개혁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광범위한 목표를 추구한다. 국가들은 이러한 발생주의 개혁의 목표로 회계책임성, 일반 대중에 대한 투명성, 공공 재정에 대한 정치인과 대중의 인식, 운영의 전부 원가에 관한 더 나은 정보, 행정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 더 많은 정보에 근거한 자산 및 부채 관리 의사 결정, 유용한 수치와 재정분석 제공을 언급하였다.

전반적으로 개혁의 목표 달성에 따른 만족도는 혼합되어 있다(〈표 3〉). 약 절반에 가까운 국가의 재무부에서 기대 효과가 달성되었다고 생각하며, 3분의 1 정도는 부분적으로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은 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혁의 의도된 효과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분류된 국가는 없었는데, 이는 완전 발생주의 회계 체계를 이미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몇몇 국가에서조차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

각국 재무부는 회계책임성과 투명성이 개혁의 주요 결과물이라고 여긴다. 발생주의 회계가 일반 대중에게 더 많은 유용한 재무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다수의 국가에서 새로운 절차와 IT시스템이 내부통제 환경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언급하였다.

〈표 3〉 OECD 국가: 개혁 목표의 달성

구 분	완전 달성	부분 달성	진행 중
회계책임성 강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이스라엘(ISR),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 터키	벨기에, 덴마크, 헝가리, 아이슬란드(ISL),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칠레, 체코, 아일랜드, 포르투갈, 영국(GBR)

〈표 3〉의 계속

구 분	완전 달성	부분 달성	진행 중
일반 대중에 대한 투명성 향상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이스라엘(ISR),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스페인,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	덴마크, 헝가리, 아이슬란드(ISL),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	벨기에, 칠레, 체코, 아일랜드, 포르투갈, 영국(GBR)
정부·국회·국민에게 유용한 수치 제공 및 재정전문가 양성	호주, 오스트리아, 프랑스, 아이슬란드(ISL), 이스라엘(ISR), 한국, 뉴질랜드, 스페인, 슬로바키아, 스위스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스웨덴	칠레, 체코,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터키, 영국(GBR)
재정 현황에 관한 정보 이용자의 이해도 제고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이스라엘(ISR),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 아이슬란드(ISL),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칠레, 헝가리, 아일랜드, 포르투갈, 터키, 영국(GBR)
운영의 전부원가에 관한 더 나은 정보 제공	호주,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ISL), 이스라엘(ISR),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칠레, 체코, 헝가리, 아일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터키, 영국(GBR)
자산, 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제공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이스라엘(ISR), 한국,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	캐나다, 핀란드, 아이슬란드(ISL),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벨기에, 칠레, 체코, 헝가리, 아일랜드, 포르투갈, 터키, 영국(GBR)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이슬란드(ISL), 이스라엘(ISR), 한국, 뉴질랜드, 스페인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호주, 칠레, 체코,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터키, 영국(GBR)

출처: OECD 발생주의 설문조사(2016)

그러나 외부 이해관계자의 정보 활용에 대한 만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주의 회계 제도와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조기에 도입했던 국가를 포함하여 다수의 국가들이 발생주의 재무 정보에 대한 정치인과 대중들의 관심이 매우 적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발생주의 재무제표가 그들의

주요 이용자에게 다소 접근하기 어려우며, 재무부가 그들의 용도와 부가가치를 보여주지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시사한다.

운영 실체(operational entities) 또는 운영 부서(operational units) 수준의 전부원가 정보를 항상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용 가능한 국가의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공공 자산의 관리와 실체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국가들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으로 행정 프로세스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데에는 한정적이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과 독립적이고 품질이 높은 감사의 개발에 따라 내부 감사의 효율성과 회계 자료의 품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발생주의 정보를 거시 재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슈에 대해 응답한 국가 중 대부분은 발생주의 정보가 재정 예측에 사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호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영국 등은 회계기준과 재정 보고서(예산서, 재무제표, 통계)의 범위를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재정 분석을 위한 회계 자료의 유용성을 높이고, 공공재정 현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혁신은 발생주의 정보를 보다 사용자 친화적이고 예산 의사 결정에 유용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목할 만한 계획은 다음과 같다:

- a. 예산 과정에 재무제표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려는 계획(예: 오스트리아)
- b. 경영자 해설의 사용,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재무보고서를 단순화 및 간소화하려는 계획(예: 영국)
- c. 시민과 의사결정자에게 공공관리의 효율성을 알리기 위해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예: 뉴질랜드의 경우 자산, 부채를 관리하는 정부의 성과를 측정하는 투자 보고서, 또는 덴마크의 경우 특정 원가에 대한 정부 간에 비교 가능한 벤치마크의 개발)

04

센터 동향

1 「국가회계예규 선진화 로드맵」 위탁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한국정부회계학회에 위탁한 「국가회계예규 선진화 로드맵(‘16.12.26~4.25, 4개월)」의 중간보고회를 3월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연구는 2014년 국가회계 체계 개편 시 이루어진 형식적 개편을 넘어 내용적 선진화를 위한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센터에서 분석한 현행 22개 국가회계예규의 개정소요사항을 바탕으로 개정필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기준개선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성적 요소를 감안하여 5개년 업무수행 로드맵을 작성하게 된다. 국가회계예규 로드맵이 수립되면 이를 통해 당면과제 중심의 사후적인 개정이 아닌 중장기적 연구가 가능해지며 체계적이고 선행적인 기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해외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방안 연구·분석」 위탁연구 착수보고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 위탁연구과제로 「해외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방안 연구·분석(‘17.3.6~8.2, 5개월)」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발생주의 국가회계로부터 산출되는 재무정보가 이해관계자 등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으며, 국내 활용방안 연구와 해외 발생주의 활용사례 분석으로 구분된다.



〈수탁연구 착수보고회(3.16.), 기획재정부 회의실(541호)〉

국내 활용방안 연구는 원가 세분화, 성과평가, 재정지표를 연구범위로 하여 설문조사, 시범산출,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재무정보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외 연구는 OECD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OECD 가입국 중 발생주의를 도입한 국가의 활용 성공·실패 사례를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고 이를 국내 활용방안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연구 결과물의 확산 및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협업을 위하여 분과(국내 활용방안: 원가, 성과, 재정지표 3개, 해외 OECD 공동연구 1개)별로 연구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첫 연구자문단 회의는 4월 초에 개최될 예정이다.

3 OECD와의 해외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방안 공동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해외 국가의 발생주의 방안 연구·분석」 과제의 일환으로 OECD의 예산 및 공공지출과(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s Division)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 공동연구의 첫 번째 과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OECD는 3월 21일

화요일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7층 중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의 상호 소개와 함께 설문조사 대상 국가의 범위, 중간보고 일정 등 업무수행계획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OECD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에 걸쳐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 뒤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 제출할 예정이다.



〈OECD와의 공동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3.2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7층 중회의실〉

4 「재무결산 Q&A」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2011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의 국가 재무결산 관련 질의회신을 종합 정리한 「재무결산 Q&A」를 발간하였다.

「재무결산 Q&A」는 중앙관서 담당공무원들이 재무결산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돕고, 내부거래 미제거 등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재무결산 Q&A」는 총 500개의 질의항목을 회계처리(397개), 디브레인 업무처리(82개), 결산보고서 작성(21개)에 관한 질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에서는 사용자가 해당 질의를 찾기 쉽도록 국가회계편람상의 지침 순서대로 질의 항목을 정리하였고, 답변내용 하단에 관련 회계처리지침 근거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디브레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에서는 재무결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브레인 관련 질의답변을 디브레인 업무처리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에서는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주요 질의 및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결산보고서상의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재무결산 Q&A」는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초에 책자로 배포되었으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및 디브레인 홈페이지에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과거부터 발생해온 유사·반복적인 재무결산 오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더 나아가 국민에게 유용하고 필수적인 재정정보가 정확하게 작성되는 기반이 되어 재정의 투명성 향상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2016회계연도 회계결산지원단 교육 실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6년 1월 10일에 2016회계연도 회계결산지원단을 대상으로 국가결산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회계결산지원단은 지난 2009회계연도부터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지원이 필요한 부처에 배치되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23명)보다 감소한 16명의 공인회계사가 선발되었다.

회계결산지원단 교육은 2017년 1월 9일을 시작으로 이론교육(1일차), 실무교육(2일차), 실습교육(3일차)의 순서로 실시되었으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이 중 1일차에 실시된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이론교육과, 2일차에 실시된 실무교육을 전담하였다. 실무교육은 ‘내부거래 제거’, ‘재무결산 업무별 유의사항(I)’, ‘재무결산 업무별 유의사항(II)’,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해설’ 순서로 구성되었다.

‘내부거래 제거’에서는 중앙관서 및 국가통합 재무제표 작성 시 제거되어야 할 내부거래 유형 및

내부거래 제거방법을 교육하였고, ‘재무결산 업무별 유의사항(Ⅰ)’에서는 결산 관련 디브리인 주요 메뉴, 재무결산 기중 오류사례 및 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재무결산 업무별 유의사항(Ⅱ)’에서는 2016 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개정사항과 결산보고서 생성방법 및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교육하였고, 마지막으로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해설’은 과거 감사원 지적사항과 동일한 오류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회계결산지원단은 교육 이후 1월 12일에 각 중앙관서에 배치되었으며, 5월 8일까지 총 4개월에 걸쳐 2016회계연도 중앙관서 결산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6 2016회계연도 공공부문 및 일반정부 재정통계 포괄범위 검토

기획재정부는 1월 2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정 실익이 없는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였다. 2017년 신규 지정기관 및 지정 해제 기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 관 명
신규지정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약진흥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환경보전협회,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지정해제	녹색사업단, 기초전력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신규 지정기관과 지정 해제 기관을 개별 검토하여 2016회계연도 공공부문 및 일반정부 포괄범위를 변경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및 일반정부 포괄범위 검토는 신규 지정기관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관의 원가보상률, 정부판매비율 등을 검토한다. 한편, 공공부문 및 일반정부 포괄범위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별 분류〉

① 제도단위 판정

* 정부로부터 독립된 제도단위이면 다음 단계, 독립된 제도단위가 아니면 일반정부로 분류

② 특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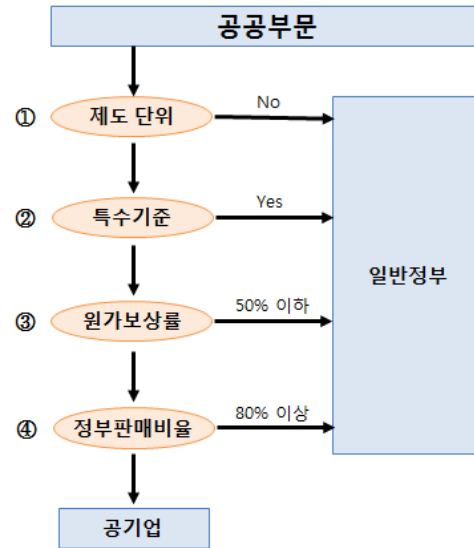
* 사회보장기구, 구조조정기구는 일반정부로 분류

③ 원가보상률

* 최근 3개년 평균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면 일반정부, 50% 초과하면 정부판매비율(4단계) 판단 대상으로 분류

④ 정부판매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정부판매비율(정부대상판매액/판매액)이 80% 이상이면 일반정부, 80% 미만이면 공기업으로 분류



05

회의 및 세미나

1 재정통계자문위원회(GFSAC)회의 참석

가. 개요

- 목적 : 재정통계(GFS) 작성을 담당하는 센터로서 통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IMF에서 주최하는 재정통계자문위원회(GFSAC)* 회의에 참석

*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Advisory Committee

- 각국의 재정통계 전문가들과 GFS 관련 주요 이슈(자산통계, 연금부채, 공공부문 통계 유용성)를 논의하고 재정통계 산출에 적용

- 출장기간 : 2017.3.14. ~ 2017.3.16.

- 출 장 지 : IMF 본사 Washington, D.C, 미국

- 출 장 자 :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
김선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특수전문직3급
김문수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사무관

- 주요일정표

일자	내 용	
1일차 2017.3.14.	<주제 1> GFS 현황보고	IMF 통계국에서 회원국별 GFS 제출현황 보고 및 향후 GFS 편제(Compilation) 및 배포(Dissemination)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주제 2>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분석과 관련 이슈, 작성 관련 어려움, 데이터가 가져오는 부가가치 등에 대해 논의 - Balance Sheet Statistics의 필요성, 도전, 방법 - 연금부채(Pension Liabilities)의 보고와 측정 - 정부자산의 측정과 보고

일자	내 용	
2일차 2017.3.15.	<주제 3> Public Sector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현황 보고 및 주요 이슈 - 공공부문 정의에 따른 도전과제 - 공공부문 데이터의 유용성
	<주제 4>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s(PPP) 현황 및 주요 사항 논의 - 정부계정에서 PPP의 활동 기록 - PPP의 정책적 영향
3일차 2017.3.16.	<주제 5> GFS 관련 최근 동향	IPSASB와 GFS의 조화 및 부의이자율 등 최신 통계처리 현안 논의 - IPSASs and GFS harmonization - 부의 이자율 기록



나. 주요내용 요약

1) GFS 현황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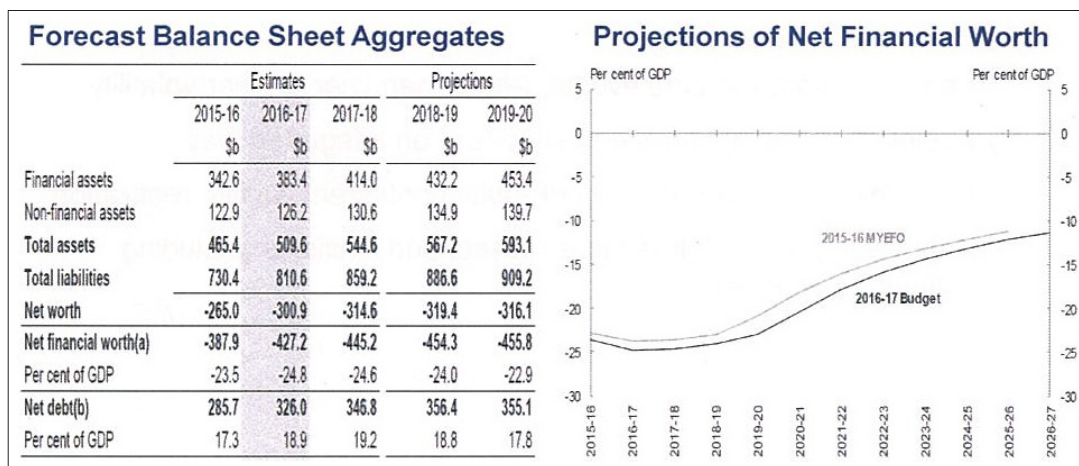
- IMF 통계국에서 회원국별 GFS 제출현황 보고 및 향후 GFS 편제(Compilation) 및 배포(Dissemination)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함
 - GFSM 2001에 따라 GFS를 작성하는 국가는 2004년 135개국에서 2015년 160개국으로 증가했으며, Full balance sheet 작성 국가는 2004년 8개국에서 2015년 37개국으로 확장되었고, 한국은 2012년부터 Full balance sheet를 제출하고 있음
 - GFS를 산출하는 국가별 포괄범위(정부범위)는 각각 다르며, 그 범위를 예산기관, 중앙정부, 일반정부, 비금융공공부문, 공공부문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2015년 기준으로 70개국의 경우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를 작성범위로 하며, 67개국의 경우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기준으로 GFS를 작성함

- 일반정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비금융공공부문(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과 공공부문(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작성범위로 하고 있는 국가는 각각 11개국 및 9개국에 달하며, 한국의 경우 일반정부 기준으로 GFS를 산출하고 비금융공공부문을 기준으로 부채통계를 산출하고 있음
- 회원국별로 GFS 편제 및 배포와 관련한 논의 가운데 발생주의 GFS를 산출하는 노력 대비 정책적 활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언급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GFS를 활용한 재정분석 개발 및 정책제안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2) 대차대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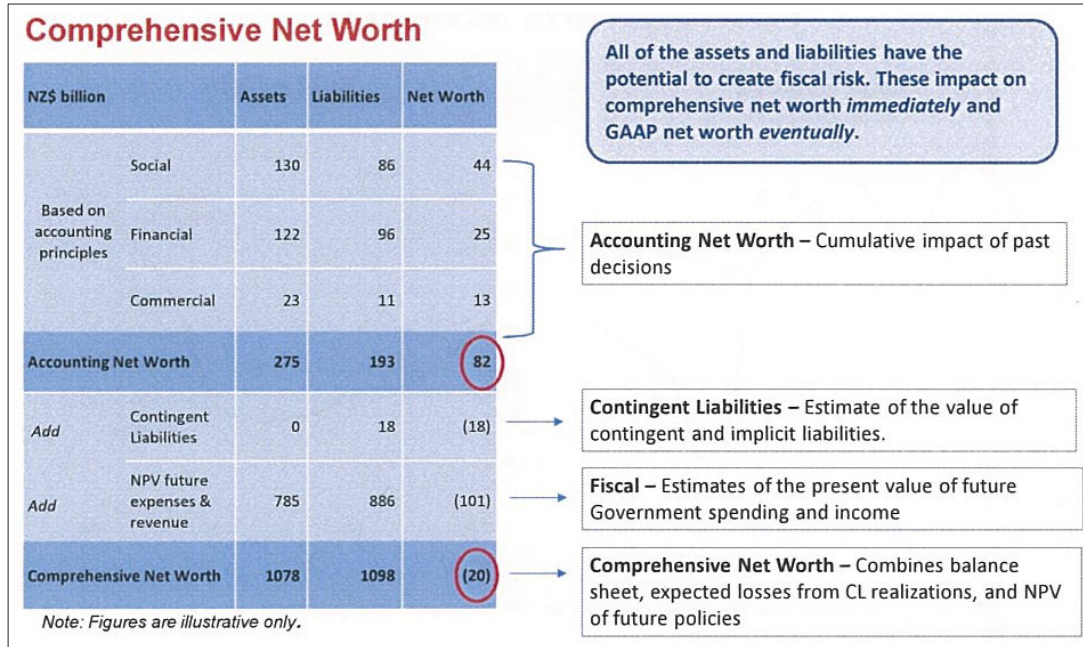
□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의 작성 및 분석과 관련한 논의

-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재정정보를 제공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공 시점이 늦고 재정목표와 대차대조표 항목 간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측면 등에 따라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이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재정정책분석에서 대차대조표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예측 대차대조표(Forecast balance sheets) 및 포괄순자산(Comprehensive Net Worth) 작성을 제시함
 - (예측 대차대조표) 호주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은 예측 대차대조표(Forecast balance sheets)를 작성해서 재정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함



출처: 2017년 GFSAC 발표자료

- (포괄 순자산) 회계기준에 따른 BS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ies) 및 정책운영에 따른 미래 현금흐름(미래수입-미래비용)에 따른 순현재가치(NPV)를 추가로 고려해서 포괄순자산(Comprehensive Net Worth)을 계상해서 적극적으로 관리



출처: 2017년 GFSAC 발표자료

- 천연자원수입(Government Revenues from Natural Resources) 논의
 - (현황) 천연자원수입이 회원국의 3분의 1 이상에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가 부족하고 국가 간 비교가능성이 떨어짐
 - IMF에서는 천연자원수입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해 GFSM 2014에 관련 템플릿을 제안하고, 천연자원 물품·기업·수입에 대한 실무적 정의를 제안함
 - (기대효과) GFSM 2014의 수입구분을 활용하면 총수입 보고 데이터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나라별로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함

□ 연금부채 산출 및 공시 논의

- 정부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직원에 대한 연금의 경우 부채 규모를 산출해서 Balance sheet 상 부채로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규모를 공시하는 국가는 IMF 회원국 중 10개국 미만임
- 산출 및 공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도 운영방식 차이, 연금부채 측정의 어려움 및 정치적인 이슈로 볼 수 있음
 - 일본은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제도 운영방식이 국민연금과 동일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로 간주해서 부채 대상에서 제외
 - 모로코와 같은 일부 국가의 경우 연금충당부채 측정(할인율, 임금인상률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산출 및 공시를 하지 못함
 - 그리고 많은 경우 정치적인 이슈(연금부채를 부채에 포함할 경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짐)로 인해 연금부채를 기존 정부부채에 포함하는 것을 꺼려함
- Eurostat에서는 EU국가를 대상으로 2017년 말 기준으로 2018년 1분기까지 국가별로 연금 부채를 산출해서 공개할 계획임

3) Public Sector

□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현황 보고

- 국가별 PSD 작성은 현재 84개국에서 제출 중이며, Level1 기준(채권+대출금)으로 37개국, Level2 기준(Level1+SDRs+현금및예금)으로 16개국, Level3 기준(Level2+기타미지급)으로 25개국, Level4 기준(Level3+보험·연금)으로 6개국이 작성 중이며, IMF와 World Bank에서는 국가별로 PSD의 편제 및 배포에 대한 권고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임

□ 공공부문 포괄범위 검토에 대한 논의

- 제도단위(the unit)가 정부에 의해 통제받거나 시장생산자인지 여부는 매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포괄범위에 대한 검토는 매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 특히, 대선과 같은 주요 정치적 변화가 있을 경우 정부 및 공공부문 조직에 큰 변화가 예상(민영화, 공기업 지정 등)됨에 따라 필수적으로 검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공공부문 포괄범위 설정 이후 매년 신설 및 해제되는 기관 위주로 검토가 이뤄졌는데, 단계적으로 공공부문 포괄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s, PPP)

□ PPP 현황 및 주요 사항 논의

- PPP는 사회기반시설 투자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 반면, 이에 따른 통계처리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실무적인 지침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 A guide to the Statistical Treatment of PPPs(Eurostat) 및 IPSAS 등에서 제시하는 PPP 처리방식에 대한 발표 및 국가별 사례 토론
- PPP는 잠재적인 우발부채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5) GFS 관련 최근 동향

□ IPSASs vs GFS

- IPSAS와 GFS는 발생주의 기준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었고, 2004년부터 IPSAS와 GFS 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현재 많은 조화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주요 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앞으로도 관련된 차이를 줄여가고자 노력할 계획임

구 분	GFS	IPSAS
목표	재정분석	회계책임성 및 의사결정 지원
보고실체	시장활동단위 제외	모든 단위 적용
인식기준	IPSAS가 인식하는 몇몇 부채를 인식 안함	-
가치측정	현행가치를 우선으로 함	공정가치, 역사적 원가 등
재평가 및 기타 금액 변화	보유손익과 기타변화 구분	실현손익 및 미실현손익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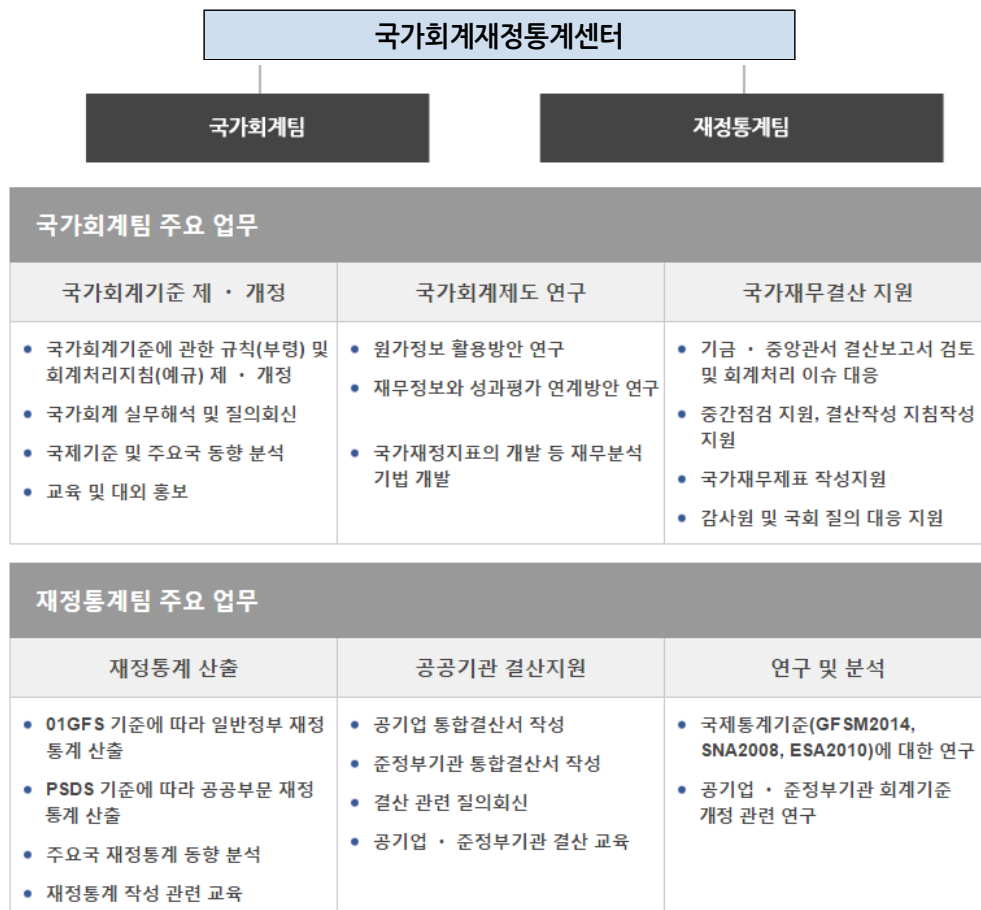
다. 맺음말

- GFSAC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안건 가운데 국제적으로 연금부채 산출·공시(EU는 2018년부터 연금부채 발표예정) 및 PPP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등 정부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공시하려는 추세임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적 통계작성 추이를 지켜보면서 준비할 필요성이 있음

06 공지사항

1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17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우리 센터에서는 2017년도 수행할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과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 받은 주제는 자체 심의를 통해 기획과제, 정부수탁과제, 위탁과제 등으로 선정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과제 제안과 관련한 센터 팀별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 의견제안 코너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뉴스레터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에서는 뉴스레터를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우편을 통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①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에서 가입신청 또는 ② Tel. 044-414-249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의 기준과 관련법령 및 센터에서 진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스레터를 비롯하여 각종 발행물과 세미나 자료, 연구보고 자료 등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4 2017 한국회계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공동주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은 2017년 5월 13일(토)에 중앙대학교에서 한국회계정보학회와 공동으로 2017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도진 소장이 「발생주의 재정통계의 현안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는 ‘재정통계 및 국가회계’가 특별분과로 신설되어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정표

구 분	내 용	
11:30 ~ 12:00	이사회	
12:00 ~ 12:50	등록 및 중식	
13:00 ~ 14:00 특별 세션	○ 개회사	권혁대(한국회계정보학회 회장, 목원대 교수)
	○ 축 사	김의형(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유광열(금융위원회 증신위 상임위원)
	○ 기조연설	정도진(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발생주의 재정통계의 현안과 활용방안」
14:10 ~ 16:40 전공 분과별 세션	○ 재정통계 및 국가회계	엄기중(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원)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산출과 관리방안 연구」
		박청규(아주대 교수) 「국가부채의 측정과 보고의 비교가능성에 대한 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배기수(충북대 교수)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와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관계성 검증」
		좌담회 좌장 : 김이배(덕성여대 교수)
16:40 ~ 공통주제 세션 및 폐회	총회 및 폐회식	

■ 편 집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전체 총괄)

김은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 발행인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표), <http://gafsc.kipf.re.kr>



전/략/목/표

■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국가회계기준의 충실한 이행 방안 마련
재무제표 공시자료 유용성 제고 방안 마련
체계적인 국가회계기준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수행

■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도 제고

원가정보의 성과지표와의 연계 및 예산에 환류를 위한 방안 마련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체계적인 재정지표 개발
각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자료 제공

■ 국내외 회계환경변화 대응

외국정부회계제도(미국, 영국, IPSAS 등) 동향 분석 및 연구
공공부문(지방, 공공기관) 회계환경 동향 분석 및 연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공감대 형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선도합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265 Fax 044.414.2570 Homepage <http://gafsc.kipf.re.kr>

2017년 4월 30일 발행